

국내입법의견조사 95-3

地方教育自治制度의 改善

1995. 9.

연구자 : 金井順 (先任研究員)
宋永仙 (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第1編 地方教育自治制度의 改善

I. 問題의 所在	7
II. 各界의 立法意見	10
1. 教育委員會의 性格과 權限	10
2. 教育委員會의 構成 및 教育委員의 選出方式·資格	22
3. 教育監의 選出方式·資格	34
4. 地方教育財政	38
5. 地方教育行政機關의 組織과 人事	43
6. 地方教育自治 地域單位	45
7. 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와 運營	48
III. 立法方向	55
1. 各界意見의 檢討	55
2. 立法方向	64

第2編 最近立法意見 動向 및 最新法令 紹介

I. 最近立法意見 動向	77
1. 最近立法意見 目錄	78
2. 最近立法意見 要旨	81

II. 主要立法豫告法律案	109
1. 主要立法豫告法律案 目錄	109
2. 主要立法豫告法律案 內容	111
III. 最新法令 目錄	136

第 1 編

地方教育自治制度의 改善

I. 問題의 所在

우리 나라 교육자치제는 8.15해방 직후 미군정 아래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49년 “교육법” 제정으로 관련조항이 마련됨으로써 법제화되었고 1952년에야 비로소 교육법시행령을 제정하여 시·도 단위 교육자치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는 5.16을 계기로 한때 중단되었고, 1964년에 다시 부활했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교육위원을 임명하고 시·도지사가 교육위원회 의장을 겸하는 등 시·도 단위의 명목상 교육자치제로 과행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의 실시라는 정치적 요인과 맞물려 교육자치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그 동안 형식적 틀만을 갖춘 채 유보되어 왔던 실질적인 시·도 단위 광역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통제를 벗어나 헌법에서 규정하는 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주적 방식에 의한 주민통제와 참여에 의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본질과는 거리가 면 양상들이 나타났고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노정시켰다. 특히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적인 의결절차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의 모호성, 이중간선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혼탁과 과열, 지방교육재정의 취약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의 존립기반 및 독자성 미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물론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지방교육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틀이 되지 못함에 따라 그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제도개선을 위한 몇차례의 법개정이 있었고 최근 1995.7.26에 ‘교육

자치법'이 또 한차례 개정¹⁾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고 또한 다양한 것은 관련당사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혀 있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고 그 동안의 개정이 부분적인 손질, 보완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문제는 특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즉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파악하여 지방자치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자치를 실시할 것인가, 교육의 특수성·전문성을 인정하여 지방자치와는 별도의 교육자치를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틀이 달라진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및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구성, 교육위원의 선출방식과 자격, 교육감의 선출방식·자격·지위 등이 달라지고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의 강약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教育委員會의 性格과 權限 問題 : 교육위원회를 어디에 두며 교육사무에 관한 권한의 범위와 행사방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교육에 관한 사무가 지방정부에서 완전 분리나 부분적 분리나 아니면 지방정부에 완전 통합이나 부분적 통합이냐,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이냐 아니면 집행기관이냐 등에 관한 것이다.

(2) 教育委員會의 構成 및 教育委員의 選出方式·資格 問題 : 몇명을 정수로 하여 어떤 자격을 가진 자로 어떤 비율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교육위원회의 정수를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교육감·지방의회의원도 교육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인가, 교육

1) 특히 5.31교육개혁안에 따라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입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95학년도 제2학기부터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실시 지침'을 마련하여(95.8)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교육위원회의 구성비율(가령 전문직 대 비전문직의 비율·비율결정의 조건)·선출방식(주민이나 교사 또는 시·도 의회의 직접선출, 후보추천, 시·도 의회의 동의·선출, 단체장의 임명 등)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3) 教育監의 選出方式·資格 問題 : 어떤 자격을 가진 자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감으로 선출하고 어떤 지위를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연령·교육경력년수 등에 제한을 둘 것인가, 주민·교육위원회·시·도의회·자치단체장 등 중에서 누가 선출권을 가지는가 등에 관한 것이다.

(4) 地方教育財政 問題 :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로 시작하여 취약한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5) 地方教育行政機關의 組織과 人事 問題 :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사에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 기관의 자율성·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법상 부교육감의 선임방법·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교육전문직의 보임확대 문제 등이 논점이다.

(6) 地方教育自治 地域單位 問題 : 지방교육자치 지역단위(교육행정조직기구·자치단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행처럼 시·도 단위 광역교육자치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 기초단위인 시·군·구 단위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할 것인가 등에 관한 것이다.

(7) 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와 運營 問題 : 학교운영위원회를 초·중등학교에 설치하는 경우 적용범위·기능(심의·의결·자문)·구성(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선출방법·구성비율·임기 등)·운영(회의 소집 및 회기, 의결정족수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위원회가 설치 안되는 학교의 경우 위원회 기능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등에 관한 것이다.

각자의 입장의 차이는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학계,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난 8월에 3차례의 전국적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또한 1995년 8월 23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개혁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에 보다 충실한 개선책 마련의 요청에 부응하여 앞에서 언급한 (1)教育委員會의 性格과 權限 (2)教育委員會의 構成 및 教育委員의 選出方式·資格 (3)教育監의 選出方式·資格 (4)地方教育財政 (5)地方教育行政機關의 組織과 人事 (6)地方教育自治實施 地域單位 (7)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 問題들을 중심으로 그 동안 각계 각층에서 제시되었던 의견들을 종합·검토하여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各界의 立法意見

1. 教育委員會의 性格과 權限

(1) 教育委員會의 性格

〈지방의회와 분리·독립된 의결기관으로 하자는 의견〉

○ 유재건(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교육자치제의 주요 원리인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자치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관으로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정책과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지역단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지침, 교육직원의 인사원칙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결·심의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발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유재건,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 제3차공청회(1995.8.23), 토론발표, 43~44쪽).

○ 신철순(전북대 교수)

현행 교육위원회의 성격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과 같은 교육자치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

고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관이 될 경우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저해하고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협력관계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행정의 종합성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라는 교육자치제의 원리에 어긋나고, 두 의결기관의 갈등은 이미 사례로 나타나고 있듯이 교육위원회가 위임형일 경우 더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신철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2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7), 22~23쪽).

〈지방의회와 분리·연계된 의결기관으로 하자는 의견〉

○ 김인영(민자당 국회의원, 국회교육위원회 민자당간사)

교육위원회가 교육·학예라는 하나의 지방행정사무에 국한된 분야에 관해 의결권을 갖는다 할 때 그것은 곧 지금의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현행의 정치체계와는 다른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관화는 곧 「지방교육의회」를 뜻하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 정치체계를 먼저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1993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금지에 대한 합헌판결」에서 “…… 교육자치는 주민에 의해서 교원, 교육행정가 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교원에 의한 또는 전문가에 의한 자치는 아니다 ……”라고 밝혔듯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주민에 의한 대표기관은 지방의회 하나 뿐인 것이다. 주민의 통제를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위임받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김인영, 『지방교육자치제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한국교육개발원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모색 공청회, 1993.9.27), 지정토론플표,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4-2) 부록, 176~177쪽).

○ 이종재(서울대 교수)

우리가 생각할 방향은, 지방교육행정의 분리·독립론은 아니더라도 준자치단체로서의 입법권 보장책은 시급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지방교육의 통합행정론도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택해야 하는 방향은 교육위원회를 준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임형 의결기구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지방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최종적 의결권을 인정하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적 관리를 존중하여 지방의회는 극히 기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전문적인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요컨대 교육위원회가 준자치단체로서 지방의회의 제한적 위임형 의결기구가 되고, 지방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문교·사회분과위원회는 폐지하여 중복심의·감사와 이로 인한 행정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이종재,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5회 교육정책토론회(1994.10), 주제발표, 32~33쪽).

○ 최희선(인천교육대학교 교수)

교육위원회와 시·도 지방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는 기관연계형 의결기관의 입장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은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명목상으로만 대등한 위상을 갖는 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과,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을 가장 중요한 지원업무로 인식하며 책임지는 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하고 있다. 또 교육자는 지방자치와 동등한 개념이라기 보다는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의 전체적인 틀속에서 전문성을 강조해되, '교육과 지방발전'이라는 명제가 정착되도록 일반행정과 상호협조·지원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에 있어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전심기관화한 것은 논리상 모순됨은 물론 헌법의 이념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는 연계체제를 구축하되,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의 위상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의회와 교육·학예의 자주성·전문성·특수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하고 또 행정적 능률성 제고 등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교육·학예에 관한 실질적인 전담 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심의·의결 결과는 시·도 의회의 본회에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최희선, "교육위원회의 위상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한국교육개발원 주최,『지방교육자치제도 어떻게 정착 시킬 것인가』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모색 공청회, 주제발표, 1993.9.27),『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4-2)부록, 164~165쪽).

○ 박석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교육위원회 민주당간사)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원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주민의 참여와 통제 등을 그 원리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관계설정이라는 측면에서)보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 점이 기본이고 주된 측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있어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의 긴밀한 연계성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그 용어의 적합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기관연계형 의결기관」으로 설정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의 핵심은 교육위원회를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실질적인 의결기관화하되,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석무,『지방교육자치제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한국교육개발원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모색 공청회, 1993.9.27), 지정토론발표,『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4-2)부록, 180쪽).

○ 한 환(경기도 교육감)

그간의 여러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거론되어 왔던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 방안과 합의제 집행기관화 방안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분류보다는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면서 교

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질 수 있는 우리 현실에 적절한 절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위원회를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관으로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다만, 이 경우 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기능을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위원회는 별도로 둘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위한 관련법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한 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 제3차공청회(1995.8.23), 토론발표, 55~56쪽).

○ 김윤태(교육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서강대 교수)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이다”로 개선해야 한다. 교육활동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현행 헌법(제31조제4항)과 교육법(제5조, 제14조제1항)에서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속성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교육·학예를 심의·의결하는 별도의 의결 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두는 것은 바로 교육을 자주적·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를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실질적인 의결기관으로 성격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김윤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위원회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 방안 제3차공청회(1995.8.23), 주제발표, 18쪽).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자는 의견〉

○ 박동수(전주대 교수)

본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정부의 사무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방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소속시키면서도 기능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현행대로 단독 제로 놔두고 교육행정을 결정하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소속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재정이나 다른 지원문제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주민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민직선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소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자치의 관할구역과 시·도의 자치관할 구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더욱 교육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한 분과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국에서는 지방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교육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 기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교육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한다.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소속된다고 해도 시·도의회가 교육위원회에 상당한 권한을 설정해 주는 경우는 크게 전문성이나 자주성이 손상되지 않을 것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소속되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교육에 반영하기 더 수월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지방교육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자치권을 확보하는데도 시·도의회가 직접나설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것이다(박동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방안,"(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2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7), 12~14쪽).

○ 문용린(21세기위원회(현 정책기획위원회)위원, 서울대 교수)

시·도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자치를 지양하고, 교육담당부시장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회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동시에 책임지도록 일원화 한다. 물론, 일원화의 전제속에서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제도장치 및 교육투자를 명문화하여 둘 수 있다(문용린, 21세기위원회주최 교육개혁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1995.5.1), 15~16쪽).

○ 김태완(계명대교수)

교육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① 첫번째 대안은 현재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심의·의결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즉,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교육분과특별위원회 형태로 하고 위원의 절반은 시·도 의원이 겸직하며

나머지는 교육전문가 중에서 선임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②두번째 대안은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으로 나누어진 교육에 관한 의결과 집행기능을 통합하여 교육위원회를 합의체 집행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일원이 되며 사무총장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대안은 교육에 대한 의결기관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은 지방의회를 통해 학교교육의 발전을 촉구할 수 있다. 두번째 대안은 교육에 대한 의결과 집행기관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학부모는 직접 교육위원이 되어 학교교육을 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은 먼저 교육계의 인식전환을 전제로 한다. 즉 종래 교육자치의 이념이라고 주장되어 온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의 완전한 분리, 독립」이라는 형식적인 명분을 버리고 지방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재정적 지원능력을 가진 시장과 도지사가 의회와 함께 지역내 학교교육을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여 지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주민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지는, 「교육행정의 일반행정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동아일보, 1995.7.31, 7면).

〈합의체 집행기관으로 하자는 의견〉

○ 정세욱(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명지대 교수)

최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논의 중에 지방교육에 관한 의결과 예산의 확정기능을 시·도의회로부터 시·도교육위원회로 이양하여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교육의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 일각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즉 시·도의회와 교육의회(교육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여·야 정치인들로 구성된 시·도의회에서 교육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은 교육자치가 아니며,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문외한들이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행정) 경력자, 교육전문가들로 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의결하고 집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방교육자치라는 사조가 깔려 있다 하겠다.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지방의회'와 별개의 '교육의회(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국가의 교육사무에 있어서도 '국회'와는 별개의 '교육국회'를 설치하여 교육사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교육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폐, 예·결산까지 교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의결하겠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외국의 입법례를 보거나, 실제적으로도 실현불가능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단에서 지켜져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이익집단의 정치적 욕구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의회는 우리가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우리의 의회이지 남의 의회가 아니다. 따라서 시·도 교육위원회는 집행기능만을 담당해야 하며 시·도의 보통집행기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정세욱,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3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 8.10), 33, 35, 38~39쪽).

○ 손 복(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들에 비추어 보건대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특별행정기관임을 알 수 있고, 조례의 제정권이나 주민의 동의로 그 성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심의권은 지방의회의 전속적인 고유권한이므로 교육위원회에 조례의 제정권이나 예산의 심의권을 주자는 주장은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왜곡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교육의회가 꼭 필요하다면 중앙에 국회가 아닌 별도의 교육의회의 설치를 주장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기에 차제에 교육위원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합의제관청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됨을 주장하고 싶다(손 복, 『지방교육자치제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한국교육개발원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모색 공청회, 1993.9.27), 지정토론 발표,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4-2)부록, 202~203쪽).

(2) 教育委員會의 權限

○ 박동수(전주대 교수)

현재 근본적인 교육정책에 관한 것들은 시·도의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만 심의·의결해서 시·도의회로 제출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현행의 지방교육자치가 너무나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자치로 지방교육자치를 하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세입세출예산, 기채 등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것이 교육위원회 기능의 이중성도 해소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한 관계속에서 지방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권한의 문제는 분리형을 채택하느냐 통합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문제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박동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방안"(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2차정책토론회, 1995.8.7), 10쪽).

○ 지병문(전남대학교 교수)

조례는 그것이 교육에 관한 것인든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이든 지방의 법이다. 만약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법인 한 지방의회의 관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된다. 교육에 관한 조례를 지방의회가 아닌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의결할 수 있게 한다면, 입법기관이 두 개 존재하는 셈이 된다. 이는 통치권의 주민귀속이라는 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조세를 부담하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예산·결산에 간섭해야 하는 근거이다(지병문, 『지방교육자치제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한국교육개발원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모색 공청회, 1993.9.27), 지정토론발표,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4-2부록, 189~190쪽)).

○ 김윤태(교육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서강대 교수)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前審機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시키면서도 그것을 별도의 기관을 두어 분장하도록 하고 있는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측면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원적 심의·의결기능으로 지방교육 행정 사무에 비능률과 행정력의 소모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학예에 관한 별도의 의결기구로서 교육위원회를 두는 한, 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의 제정, 예·결산안 심의,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등 주민 부담에 관한 사안 등은 주민자치의 정신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기능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위원회는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김윤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위원회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 방안 제3차공청회(1995.8.23), 주제발표, 19쪽).

○ 이종재(서울대 교수)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위원회가 준자치단체로서 지방의회의 제한적 위임형 의결기구가 되고, 지방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문교·사회분과위원회는 폐지하여 중복 심의·감사와 이로 인한 행정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선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고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말하자면 종래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중에서 ①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의결로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하고, ②예산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중 교육비 전출금과 주민의 직접적인 추가부담 사항에 국한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중앙에서 배정한 교육비 예산은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위임해 주는 방안이다. ③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주민통제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지역교육의 상황·수준·기본방침·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심의과정을 갖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종재,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5회 교육정책토론회(1994.10), 주제발표, 32~33쪽).

○ 박석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교육위원회 민주당간사)

①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가 전담해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비추어 당연하다 하겠다. 다만,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되,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및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제정·개폐에 있어 일정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의결기관화 및 지방의회와의 연계강화라는 견지에서 볼 때,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은 교육위원회의 전담의결사항으로 하되, 다만 그 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거나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 될 것이다.

③ 교육행정사무에 관한 감사 및 조사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현행 법규상의 애매함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의 전담 소관 사항으로 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시급한 법규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④ 중요한 교육정책 및 교육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한 결정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하자는 제안에 동의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기관의 설치와 폐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지침, 교육기관의 교원 및 직원인사의 기본방침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추가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박석무, 『지방교육자치제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한국교육개발원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모색 공청회, 1993.9.27), 지정토론발표,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4-2)부록, 180~181쪽).

○ 김명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경북대 교수)

①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각 시·도의 중요한 교육정책과 교육운영의 기본방향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③ 타부분과 상충되는 조례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주민의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에 국한하여 지방의회가 최종 심의·의결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김명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 제3차공청회(1995.8.23), 토론발표, 27~29쪽).

○ 정봉도(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① 교육자치제의 기본이념이나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한 별도의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설치한 근본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는 개정되어야 하며,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사무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종결하도록 하고, 시·도 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시·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여야 할 것이다.

② 교육위원회가 교육행정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자치제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참여권인 교육정책 심의사항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추가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법 제13조제1항각호에 “지방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③ 관계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야기되는 행정의 모순과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3조제1항제6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으로 된 규정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및 사립학교 설치·폐지”로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설치·폐지에 대해서도 공립학교의 경우와 같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정봉도,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특수교육연구』 제19집, 대구대학교, 1992년, 12~13, 16쪽).

○ 김호일(민자당 국회의원, 국회교육위원회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내용을 보면 이 문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을 위하여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최종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교육자치에서 근본골격 변동은 지방의회 등의 반대로 당분간 어렵다는 측면에서 예·결산안(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제외)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가 최종의결토록 해야 할 것이다(김호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어떻게”, 『교육자치』(한국교육자치발전연구원), 1995년 5월호, 65쪽).

2. 教育委員會의 構成 및 教育委員의 選出方式 · 資格

(1) 教育委員會의 構成

(가) 구성대상 및 비율

○ 김운태(교육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서강대 교수)

교육위원회 구성은 지방의회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방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도의회 의원 중 일정수가 교육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시·도의회 의원은 교육위원회 참여는 시·도의회 의원이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대표로서 지방교육·학예에 관한 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되고, 그만큼 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출되는 교육전문가와 지방의회 의원이 함께 교육·학예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세제개혁 등을 통하여 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기여가 강화되는 것을 전제로 교육위원회 구성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교육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이 추천한 자(초·중등교원을 포함한 교육전문가 등)중에서 시·도의회가 선출한 위원과,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시·도의회 의원의 교육위원회 구성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되, 적어도 교육위원회의 1/2은 교육전문가로 구성한다.

- 교육위원의 정수는 각 시·도의 규모에 따라 7~15인으로 한다.
(김윤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방안 제3차공청회(1995.8.23), 주제발표, 20쪽).

○ 김태완(계명대 교수)

교육에 관한 심의·의결을 지방의회의 교육분과위원회 형태로 일원화하며, 교육분과위원회 위원의 1/2은 시·도의회 의원이 겸직하고, 나머지 1/2은 교육 전문가 중에서 시·도의회가 선임하도록 한다(김태완,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교육개혁위원회 주최, 대구광역시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1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3), 27쪽).

○ 이종재(서울대 교수)

직선에 의한 교육위원은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선출하고 지방의회에서 의원중 동수의 위원을 선출하여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종재,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5회 교육정책토론회(1994.10), 주제 발표, 33쪽).

○ 김호일(민자당 국회의원, 국회교육위원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 정수의 1/3은 자치단체장이 복수추천한 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김호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어떻게”, 『교육자치』(한국교육자치발전연구원), 1995년 5월호, 65쪽).

(나) 교육위원의 정수

○ 김윤태(교육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서강대 교수)

7~26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현행 각 자치단체별 교육위원 정수를 지역별 인구수에 근거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수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인력 및 행정 업무의 감소와 함께 교육위원회 기능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김윤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방안 제3차공청회(1995.8.23), 주제발표, 20~21쪽).

○ 정세욱(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명지대 교수)

교육위원회에 따라 교육위원 정수의 편차가 심하고, 업무량과 교육위원 정수 간에 연계가 없다. 따라서 교육위원의 정수는 5~7인(서울, 부산, 경기도 등 인구 3백만 이상인 시·도는 7인, 기타 시·도는 5인)으로 하도록 개선한다(정세욱,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3차정책토론회, 1995.8.10), 37, 39쪽).

○ 김명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경북대 교수)

현행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정원 책정의 기준에 타당성과 일관성이 없어 격차(7~26명)가 심하다. 이는 각 시·도의 인구수는 감안하지 않고 교육청수와 자치구수만을 기준삼아 정원수를 책정했다는 데서 큰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교육위원수가 2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수로 구성될수록 의사 결정에 효율화를 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광역자치구인 시·도교육위원의 정원은 지역규모인 자치구수와 인구수 비례에 따라 7~15명 선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예: 기본수 7명에 100만명당 1명씩 가산)(김명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교육개혁위원회 주최, 대구광역시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1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3), 8쪽).

○ 정봉도(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어떤 시·도에서는 교육위원수가 너무 많고 어떤 시·도에서는 너무 적어 교육위원회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현행의 자치구 및 하급행정기관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교육위원의 정수 방법을 지역의 인구규모에 따라 10~20명으로 정수를 조정·개정해야 할 것이다(정봉도,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특수교육연구』 제19집, 대구대학교, 1992년, 13~14쪽).

○ 한국교육개발연구원

7~26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현행 교육위원 정수를 9~15명 규모로 재조정함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의 각 자치단체별 교육위원 정수를 지역별 인

구수에 근거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수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인력 및 행정 업무의 감소와 함께 교육위원회 기능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교육개발연구원,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4-2, 1994년 8월, 70쪽).

(2) 教育委員의 選出方式

〈시·도 의회에서 선출하자는 의견〉

(가) 기초의회 추천없이 시·도의회에서 직접 선출하자는 의견

○ 한국교육개발연구원

현행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개선하고자 할 때, 그 개선방안은 기초의회의 추천 없이 시·도 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위원 선출의 절차를 간소화함과 함께 지역교육의 발전에 적합한 인사들을 폭넓은 선택 범위속에서 보다 균형있게 택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교육개발연구원,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연구 보고서 94-2, 1994년 8월, 73~74쪽).

○ 최희선(인천교육대 교수)

시·도의회가 시·군·구 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 현행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절차의 번잡과 비리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의 대안으로는 지방의회와의 연계-협조, 행정구역 개편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시·도의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최희선, “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교육자치제”, 한국교육행정학회 주최 춘계학술대회(1995.3.20) 주제발표; 세계일보, 95.3.21, 11면).

○ 이승현(경북교육위원회 의장)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개념이며 교육자치에 있어서는 두 개념에 더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의 선출은 현행처럼 주민의 대표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위원을 선출하되 시·도의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이승현,『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5회 교육정책토론회(1994.10), 토론발표, 65쪽).

(나) 추천을 통해 시·도의회에서 선출하자는 의견

○ 김호일(민자당 국회의원, 국회교육위원회 의원)

추천과정에서의 각종 부조리를 방지하고 광역적인 유능한 인물을 영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에서 직접 선출해서, 교육위원 정수의 1/3은 자치단체장이 복수추천한 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김호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어떻게”,『교육자치』(한국교육자치 발전연구원), 1995년 5월호, 65쪽).

○ 김윤태(교육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서강대 교수)

교육위원 중 선출위원은 현재와 같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교육전문가를 선출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특히 정당을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단위학교별로 설치·운영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이 교육전문가 중에서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후보자의 정당 배제와 유능한 후보자의 추천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교육위원을 선출한다(김윤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방안 제3차공청회(1995.8.23), 주제발표, 20쪽).

○ 정유성(연세대 강사, 교육학)

① 교육자치의 기본단위인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가 교육위원의 일부를 추천하여 시·도의회에서 뽑도록 한 것은 나름대로 새롭다. 그러나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들이 일회적으로 모여 교육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광역수준의 교육위원회와 개별학교 단위의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에 기초단위, 즉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같은 상시적인 협의체를 두어 중요 교육사안 일반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 교육위원을 추천하게 하는 것이다.

②아울러 굳이 시·도의원이 교육위원을 겸직한다면 이번에 도입된 비례대표제를 활용하여 각 정당에서 교육후보를 미리 지명하고 이를 유권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동아일보, 1995.8.28, 7면).

(다) 기타

○ 유기동(언북중학교 교장)

현재 교육위원선출 방식이 “간선의 간선”으로 되어 있어 논란이 있는데, 특히 시·군·구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추천한 후보가 탈락되고 그렇지 못한 후보가 선출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선출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린 사례도 있었다. 교육위원의 주민직선 주장도 있으나 선거경비 등 문제점도 있어, 기초의회나 시·도의회 어느 한쪽에서 학식·덕망·경력·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유기동, “교육자치, 이대로 좋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19회 교육정책토론회(1992.6), 토론발표, 50쪽).

〈주민직선으로 하자는 의견〉

○ 전풍자(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교육자치제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제도는 꽤 알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뽑았다는 사실이 지방자치제도를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육위원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전풍자,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5회 교육정책토론회(1994.10), 토론발표, 70쪽).

○ 홍종훈(매일신문 논설위원)

기초의회의 추천을 받아 광역의회서 선출하는 2중간선교육위원선출제도가 형식적으로는 교육행정에 관한 주민대표를 두차례나 겹증함으로써 주민과 가장 호흡이 맞는 후보를 뽑을 것 같다. 그러나 상황은 이와 판이하다. 우리 후대의 장래를 좌우할 교육정책을 다룰 교육위원선거는 사실상 주민이나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인재를 모셔올 정도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말이 선거지 사실상 천거나 초빙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선거를 하면서 금전향응이 오간다든지 정치목적의 조작을 배경으로 무조건 자기편을 뽑으려든다면 굳이 선거비용때문에 간선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게 오히려 주민의사를 바로 반영하고 교육자치의 의미를 주민에게 심어주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매일신문, 1995.8.17, 5면).

○ 김명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경북대 교수)

현행 이중간선제에 따른 혼탁양상과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위원회의 독립성과 주민대표성을 갖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직선제에 의한 선출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선출시기를 이와 같은 점에서 지난 6.27 지방자치선거에서 교육위원을 함께 선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선출시기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동시에 선출하면 행·재정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시·도의회가 선출하는 방식은 지역주민의 대표성보다는 학교단위별 대표성이 부각되어 혼란과 과열경쟁이 우려된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전국적으로 정착된 이후에나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김명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교육개혁위원회 주최, 대구광역시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1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3), 6~7쪽;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 제3차공청회(1995.8.23), 토론행사, 30쪽).

○ 이종재(서울대 교수)

교육위원회의 이중간선제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꾸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때 직선에 의한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선출하고 지방의회에서 의원중 동수의 위원을 선출하여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병행하여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의 직선으로 하되 교직단체, 육성회연합회, 시·도의회에서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많은 문제가 풀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종재,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

원단체총연합회 제25회 교육정책토론회(1994.10), 주제발표, 33쪽).

○ 박석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교육위원회 민주당간사)

현행법은 시·도교육위원을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그러나 주민참여의 이념을 살리기 위해 교육위원의 선출은 주민직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한 현행의 시·군·구와 시·도의회 이중선출을 단순화하여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도록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박석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어떻게?”, 『교육자치』(한국교육자치발전연구원), 1995년 5월호, 64쪽).

〈기타〉

(가) 시·도지사가 임명하자는 의견

○ 정세옥(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명지대 교수)

교육위원의 자격을 제한하지 말고 인격이 고매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①시·도지사가 교육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위원을 임명(제1안)하거나, ②주민이 직접 선거(제2안)하여 뽑도록 한다(정세옥,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3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10), 38~39쪽).

(나)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출방식에 관한 의견

○ 윤정일(서울대 교수)

(i) 시·군·구 교육위원은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주민직선(5~13인 정수)으로 한다. (ii) 시·도교육위원은 ①시·군·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7~15인 정수)하거나, ②경력직 교육위원은 교직단체, 학회, 학부모회 등의 직능단체에서 선출하고, 비경력직 후보자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선거공영제를 채택한다(윤정일, “교육자치제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책”(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3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10), 13~14쪽).

○ 김신복(서울대 교수)

시·군단위의 기초단위 교육위원 선출은 주민직선이 바람직하지만, 시·도 단위에서는 선거구가 국회의원선거구보다 커질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선거비용도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에서 선출하거나 시·군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감까지 직선하게 되면 교육위원회와의 위상다툼과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김신복,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5회 교육정책토론회(1994.10), 토론발표, 54~55쪽).

(다) 교사가 뽑도록 하자는 의견

○ 구희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교육위원 선출이 기초의회에서 복수추천한 뒤 광역의회에서 1명을 뽑는 이중 간선제인 데다 교육감은 교육위원에 의해 선출되어 진정한 교육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 교육감, 교육장, 교육위원 등을 일선 교사가 직접 뽑는 방안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교육자치제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한겨레신문, 95.7.23, 16면).

(3) 教育委員의 資格

○ 김윤태(교육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서강대 교수)

교육위원 중 교육전문가 교육위원의 자격은 다음 경력이 각 10년 이상 또는 각 경력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 국·공·사립학교 교원 경력
- 사회교육기관 전문요원 경력
- 각급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교육행정 경력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경력

(김윤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방안 제3차공청회(1995.8.23), 주제발표, 21쪽).

○ 윤정일(서울대 교수)

교육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①현직교원, 교육연구경력자, 교육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의 출마 허용 ②교육·학예분야 사설학원 경영자의 교육위원 겸직금지 ③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경력자나 교육위원 선출시기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정당간부로 활동한 자의 출마 금지를 개선점으로 제안한다(윤정일, “교육자치제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책”(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3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10), 14쪽).

○ 정세욱(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명지대교수)

현 제도는 교육위원의 1/2이상을 교육전문가로 선출하도록 하고 교육경력 혹은 교육행정경력을 합산하여 10년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교육위원의 고령화를 초래할 수 있고, 비전문가에 의한 교육위원회의 구성, 일반인에 의한 통제(layman control)라는 추세에 어긋나며 ‘교육자에 의한 자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①교육위원 정수의 1/2이상을 교육전문가(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선임하도록 하지 말고, 교육위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이면 교육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으면 제척시키도록 해야 한다(정세욱,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3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10), 36, 38쪽).

○ 전풍자(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①교육위원이 될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어야 함에는 틀림이 없다. 교육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육경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른 교육의지와 실천의지라고 본다. 따라서 교육위원의 자격에 교육경력 자격을 두지 말고 직선에 임하는 지역주민의 판단에 맡겨 ‘교육을 아는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력조건보다는 연령안배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그리고 초·중등 교사에게도 교육위원의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전풍자,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5회 교육정책토론회(1994.10), 토론발표, 71쪽).

○ 박은실(대한 YMCA간사)

현직 교원들이 교육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교육자치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을 중대시키는 한편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현직 교원이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학교교육에 전념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당선후 교육위원으로서의 임기동안 휴직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원리를 구현하게 하므로 합당하다고 본다(박은실, “교사의 교육위원참여-교육현실을 가장 잘아는 사람이 교사”, 『새교육』, 1995년 4월호, 19~20쪽).

○ 민병덕(전북 장수고등학교 교사)

1991년 교육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이후 교육위원회 활동실적은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다. 그것은 교육위원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다. 제2기 교육위원의 출범에 앞서 교육위원회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시켜 나간다면 교육활동에 여념이 없는 교사들을 교육위원회에 직접 참석시키지 않더라도 교육현장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해서 교육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지방교육자치 제도자체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민병덕, “교사의 교육위원 참여 - 지방교육자치제 기능개선이 우선”, 『새교육』, 1995년 4월호, 21~22쪽).

○ 박동수(전주대 교수)

①현재 경력직은 교육경력 10년 교육행정경력 10년 또는 합해서 10년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성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교육자치의 보수화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력년수의 하향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연령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는 전연 대학교육을 관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현실적으로는 교육위원으로 교수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정한 비율을 두어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신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당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현직교사들의 경우 현직에서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출마후 선출되었을 때는 휴직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리라고 본다(박동수, “지방교육자치 제 개선 방안”(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2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7), 14~15쪽).

○ 정봉도(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사립학교 교원 …”을 “… 사립학교 교직원 …”으로, 제3호 “…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을 “… 법인의 임원 및 직원 …”으로 동 규정을 보완·개정하여 교원 또는 법인의 임원과 같이 동일기관의 사무직원도 교육위원으로 겸직할 수 없는 직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리상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를 추가 신설하여 학원경영자와 유치원경영자도 교육위원의 겸직금지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정봉도,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특수교육연구』 제19집, 대구대학교, 1992년, 14~15쪽).

○ 중앙일보 사설

교육위원 후보기준을 명시하여 정치적 오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학원 경영 등 교육관련 영업행위자나 금고이상의 전과자도 후보자격에서 배제하는 등 구체적 기준강화를 통해 교육위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중앙일보, 1995.8.19, 5면).

3. 教育監의 選出方式 · 資格

(1) 教育監의 選出方式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자는 의견〉

(가) 후보등록제나 후보추천위원회제를 도입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자는 의견

○ 김윤태(교육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서강대 교수)

시·도 교육감의 선출 방식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밀접하게 연계시킬 수 있도록 '교육감후보추천위원회'(가칭)에서 2인의 교육감후보를 추천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교육감후보추천위원회'는 당해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인, 당해 시·도 지방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1인, 당해 교육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1인,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1인으로 구성한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2인의 교육감후보 추천위원회지명권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의 연계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시·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김윤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방안 제3차공청회(1995.8.23), 주제발표, 23쪽).

○ 김명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경북대 교수)

현재의 선출방식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는 헌법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교육계 인사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심지어는 선거권을 가진 교육위원이 교육감으로 피선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기관분립형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나는 실정이었다.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의 개선방안으로 지금까지 『후보등록제』와 『후보추천위원회제』의 두가지 방안이 제기되어 왔다. 이 두가지 교육감선출 개선방안이 지니고 있는 강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이 다소있다 할지라도 『후보등록제』나 『후보추천위원회제』가 채택될 경우, 현재와 같은 비등록, 비추천, 비공개에 의한 교육감선출 방

식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등록을 기피할 경향이 있는 유능한 유자격인사들을 후보로 적극적으로 추대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본다(김명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교육개혁위원회 주최, 대구광역시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1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3), 11~12쪽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 제3차공청회(1995.8.23), 토론발표, 32쪽).

○ 유기동(언북중학교 교장)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 선출방식의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추대형식의 선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추천위원회의 공정한 구성문제, 교육위원 고유의 교육감 선출권에의 관여라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입후보, 추천, 추대 등 어떤 형태든 교육위원회에 소정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후보등록을 하고 그 가운데서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유기동, “교육자치, 이대로 좋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19회교육정책토론회(1992.6), 토론발표, 51쪽).

○ 윤정일(서울대 교수)

현행의 무등록·무추천·비공개 교육감 선출방식은 있을 수 없는 선출방식이며 이원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교육감은 절대로 선출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감 후보등록이나 후보추천제를 선택할 경우 교육자 집단내에 선거열풍이 불어 각종 선거비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현재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출마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제도와 현실이 부합하지 않는 모순을 자초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에 후보 등록→소견발표→교육위원의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택하도록 한다(윤정일, “교육자치제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책”(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3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10), 10, 14쪽).

(나)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선출하자는 의견

○ 정세욱(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명지대교수)

시·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서 시·도교육감을 호선하여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시·도 교육위원회가 일정한 기일내에 교육감을 선출하지 않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위원회에서 지명하여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는다(정세욱,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3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10), 39쪽).

〈시·도의회가 선출하자는 의견〉

○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선출방식을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의회가 뽑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중앙일보, 1995.8.19, 5면).

○ 박동수(전주대 교수)

교육감의 선출은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시·도의회가 교육감을 선출함으로써 보다 더 주민자치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처럼 비정당원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도지사가 추천하여 시·도의회에서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박동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방안”(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2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7), 16쪽).

〈주민직선으로 하자는 의견〉

○ 신철순(전북대 교수)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2·3항,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 선거과정이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음성적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리가 조장될 우려가 있다. 개선안으로 ①교육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한다. ②교육감 후보자는 교육감선출 일정기간 전에 등록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개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신철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2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7), 28쪽).

〈시·도지사가 임명하자는 의견〉

○ 김태완(계명대 교수)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면, 시장·도지사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으로 임명한다(김태완,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교육개혁 위원회 주최, 대구광역시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1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3), 27쪽).

(2) 教育監의 資格

○ 김명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경북대 교수)

교육감이란 직책이야말로 단순한 행정자가 아닌 교육에 대한 전문적 소양과 지식, 훈련을 쌓고 모든 교육자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제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교육행정적 전문화를 촉진시키고 교육자치의 활성화와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도 교육감의 자격기준은 경력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영·불과 같이 적어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김명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 제3차공청회(1995.8.23), 토론행사, 31~32쪽).

○ 유기동(언복중학교 교장)

①교육감의 피선자격으로서 일정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경력을 요구하는 규정은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보며 오히려 자격요건을 25년 정

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시·도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분야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고등교육분야에 종사해 온 대학교수보다는 보통교육분야의 경력자로 선출하는 것이 업무의 성격상 타당하다고 본다(유기동, “교육자치, 이대로 좋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19회교육정책토론회(1992.6), 토론발표, 51~52쪽).

○ 박동수(전주대 교수)

교육감 자격에 있어서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의 제한이 너무 높아 마찬가지로 교육의 보수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임명직이었을 때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일정한 연령이 되면 퇴직해야 되는데 선출직일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서 얼마든지 진출할 수가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박동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방안”(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2차정책토론회, 1995.8.7), 11쪽).

○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교육감 자격과 관련된 현행의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점은 요구 경력 분야를 교육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한정하는 것이 너무 편협하다는 데에 있다. 교육운영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보호·유지한다는 이 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경력분야를 넓혀 교육연구 경력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한국교육개발연구원,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4-2, 1994년 8월, 75쪽).

4. 地方教育財政

○ 김윤태(교육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서강대 교수)

①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내의 학교부지 확보를 비롯하여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 학교급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직접 학교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자치구에 ‘학교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학교지원 특별회계는 관할구역내에 소

재하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 교육시설 및 설비확충 등에 사용되도록 한다.

②아울러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확충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부지의 확보를 위한 시·도 자치단체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김윤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위원회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방안 제3차공청회(1995.8.23), 주제발표, 24쪽).

○ 유재건(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①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같은 직접지원이 필요하며, ②이외에는 학교용지의 확보·제공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③예산 및 결산 결정과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과감한 세제개혁을 통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원활한 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재정 17%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교육자치가 거의 어렵다고 본다(유재건,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 제3차공청회(1995.8.23), 토론발표, 45쪽).

○ 고재득(민주당 정책실장)

①교육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가령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이 그 예이다. ②재정확보없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내실을 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등 자치단체 스스로 교육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지방재정 총액의 일정비율을 교육비에 전입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고재득,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5회 교육정책토론회(1994.10), 토론 발표, 59쪽).

○ 이승현(경북교육위원회 의장)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자립이 선결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에 의한 보조금 위주가 아니고 지방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승현,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5회 교육정책토론회(1994.10), 토론발표, 63~64쪽).

○ 정봉도(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①지방교육양여금 배분기준이 지방의 재정능력이나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인구비례에 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②지방교육재원 총규모의 비약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한다. ③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가 낮아 중앙에의 의존도가 크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지방교육세를 신설토록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 책임한계를 법제화하여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의 용지확보, 공공도서관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교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비 부담, 공립중등교원봉급부담을 확대토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증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 참여의식을 높인다(정봉도,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특수교육연구』 제19집, 대구대학교, 1992년, 17~18쪽).

○ 유기동(언북중학교 교장)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며, 낮은 공교육비 수준, 열악한 시설·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①지방교육세 신설, ②지방재정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출비율 법정화,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④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확충 등 획기적 조치로 GNP의 5% 수준으로 교육비를 상향 확보토록 노력해야 한다. 일부 행정관료 중에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귀속시켜 민선시장, 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자기 선거에 반영시키자는 논의도 있으나 이는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발상이므로 동의할 수 없

다(유기동, “교육자치, 이대로 좋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19회 교육정책 토론회(1992.6), 토론행사, 53~54쪽).

○ 박동수(전주대 교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의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의 비율을 높여나가야 하고 지방정부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는 협의하여 지방교부세의 부과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리라고 본다. 자치는 그만큼 재정적 부담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지방정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등을 적절하게 지원하여 지방교육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박동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2차정책토론회, 1995.8.7), 17쪽).

○ 윤정일(서울대 교수)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 (i)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보완 --- ① 지방교육양여금 배분기준의 합리화: 인구 기준에서 학생수 및 교원수, 학교수 기준으로 전환함 ② 교육세제 개편: 지방 교육세와 국세교육세로 이원화하여 국세교육세만을 양여금으로 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으로 이관함
- (ii)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규정 --- ① 유치원, 초·중등학교 용지 확보: 학교부지 확보 특별법 제정 ② 의무교육기관 이외의 공립학교 교원봉급 부담(특별시: 전액 부담, 광역시: 반액 부담, 도: 10% 부담) ③ 담배소비세의 일정률을 교육비로 전출(6대 도시: 현행 45%에서 50% 전출, 도: 25% 전출)
- (iii) 민간자본의 적극 유치 --- ① 기존의 육성회비(기성회비)를 납입금에 포함시켜 납입금을 현실화하고 각급학교가 자율협찬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후원회 신설 허용 ② 새로운 후원회(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우를 통한 기부동기 유발, 기부금 사용범위: 시설투자, 도서구입, 연구지원, 장학금지급 등)

(윤정일, “교육자치제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책”(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서울

특별시교육청 주관,『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3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10), 16~17쪽).

○ 지병문(전남대학교 교수)

오늘날 선진국은 교육을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기능으로 이해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국가사무로 이해한다. 물론 교육을 국가사무로 간주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중앙정부가 교육 내용까지를 배타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교육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지방정부와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학교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별적인 지방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일선학교가 스스로 교육제도나 교육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자치를 구실로 교육비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서는 아니된다. 시·도에 대한 교육자치 실시이후 지방교육부담금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지방정부로 하여금 교육비를 전담하게 하면, 교육의 질과 내용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인데,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 예산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비를 대폭 증액,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지병문,『지방교육자치제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한국교육개발원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모색 공청회, 1993. 9.27), 지정토론행 표,『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4-2)부록, 187~188쪽).

○ 내무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을 할 때 법령상 부담의무가 없는 교육부문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육재정확충방안으로 98년까지 지방재정에서 2조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준 일반회계에서의 학교급식시설 지원 불허방침은 지방재정보호를 위해 변함없을 것이다(중앙일보, 1995.9.7, 13면).

○ 교육부

학교급식법상 학교설립자(공립은 지자체)가 학교급식 시설비를 부담하게 되

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학교포함)에 기부나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내무부의 주장은 논리가 약하다(중앙일보, 1995. 9.7, 13면).

○ 학부모 ·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시설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재정이 학교급식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지방정치의 재량에 속하는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다(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경제정의실천연합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학부모 · 시민단체 성명(1995.9.5), 중앙일보, 1995.9.7, 13면).

5. 地方教育行政機關의 組織과 人事

○ 김명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경북대 교수)

국가공무원으로서 부교육감은 시 · 도 교육감이 추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0조), 중앙정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고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용권을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도 인사의 전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김명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교육개혁위원회 주최, 대구광역시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1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3), 13쪽).

○ 윤정일(서울대 교수)

①교육청의 일반적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화한다. ②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임명하며, 부교육감의 자격요건은 법률로 규정한다. ③학무행정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조직으로 개편한다(윤정일, “교육자치제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책”(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1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3), 13쪽).

가?』 제3차정책토론회, 1995.8.10), 15쪽).

○ 김신복(서울대 교수)

① 지방교육행정조직에 관해서는 상당한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무행정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이다. 행정요원을 과도하게 중용하지 못하도록 총정원이나 인건비 비율의 상한선 정도는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 특히 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리자면 교육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최소화하고 일반직은 국장급까지도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일반행정기관과 보조를 같이하여 독자적인 직급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김신복,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5회 교육정책토론회(1994. 10), 토론발표, 55~56쪽).

○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사권의 독립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관련 부처와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가 시급히 검토되어야 한다(한국교육개발연구원,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4-2, 1994년 8월, 127쪽).

○ 이승현(경북교육위원회 의장)

시·도 교육청의 인사부문에서 부교육감과 국·과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를 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앙통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겠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가공무원을 민선교육감이 임명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이승현,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5회 교육정책토론회(1994.10), 토론발표, 64쪽).

6. 地方教育自治 地域單位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하자는 의견〉

○ 김신복(서울대 교수)

교육자치제를 시·군·자치구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여건과 자치역량이 갖추어지면 확대실시하겠다는 것은 자연시키는 구실에 불과하다. 현재 시·도와 시·군·구의 여건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이유 중에서 교육재정의 자립이 교육자치의 필수조건은 아니며 인사교류의 폐쇄성은 법령으로 교류를 제도화하면 해결될 수 있고 행정비용의 과다문제는 자치구역을 몇개 시·군씩 통합하여 광역화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욕을 높이고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시·군·구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한다(김신복,『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5회 교육정책토론회(1994.10), 토론발표, 55쪽).

○ 박석무(민주당국회의원,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기초교육자치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설치증가에 따르는 재정수요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는 기초교육자치제를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발상일 뿐 교육적인 고려에서 나온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통합교육청을 유지시킨다면 재정문제나 영세교육청문제가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현재 지방자치도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실시되고 있는 바 이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도 기초교육자치실시의 당위성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박석무,『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어떻게?』,『교육자치』(한국교육자치발전연구원), 1995년 5월호, 64쪽).

○ 지병문(전남대학교 교수)

시·도 교육청은 관할 구역내의 시·군·구 교육청 사무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교육부와 시·군·구 교육청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그

러므로, 교육자치를 전반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시·도 교육청은 직접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시·도보다는 시·군·구에 대해 교육자치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시·도에 한해 교육자치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관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발상의 결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군·구에 대한 교육자치의 실시가 시급히 요구된다(지병문,『지방교육자치제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한국교육개발원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모색 공청회, 1993.9.27), 지정토론행사,『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4-2)부록, 188~189쪽).

○ 신철순(전북대 교수)

시·군·구를 교육자치제의 실시단위로 하지 않는 것은 지방분권화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자기자녀들의 취학과 직접 관계가 있는 지역의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군·구 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통합교육청을 분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교직원 인사교류의 경직성 문제는 시·군·구 간의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안만 수립되면 해결될 수 있으며, 지역간 교육여건의 불균형은 공정한 재정배분의 문제이며, 중앙정부나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편중된 지역투자를 지양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해결될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신철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전라북도교육청 주관,『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2차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5.8.7), 24~25쪽).

○ 유재건(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교육자치제도가 우리 나라 교육을 살리는 근본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시·군·구 자치구의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지역주민의 교육자치 참여의 길을 열어놓아야 하겠다. 지방자치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초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교육에의 주민참여는 이루어져야 한다(유재건,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주최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 제3차공청회(1995.8.23), 토론행사, 45쪽).

〈확대실시 신중론〉

○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방재정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경우 교육자치도 기초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바로 기초단위까지의 교육자치를 실시 할 경우 교육행정의 불안정과 교육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므로, 안정성이 특히 중시되는 교육분야의 전면적 자치실시는 여전히 성숙에 따라 점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 기초단위의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군·구 교육청의 통·폐합과 분리 등의 조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한국교육개발연구원,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4-2, 1994년 8월, 127쪽).

〈현행 광역교육자치제 유지론〉

○ 박동수(전주대 교수)

지방교육자치의 지역적 수준은 광역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세계적 경향이 자치구역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기초단위에서까지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초·중등학교의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개별성은 강할지 모르지만 공통기준에 의한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도농간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가 있으며 교육행정소요경비가 증가하고 실지로 기초지방정부가 재정능력이 없다는 것과 영세교육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교직원의 인사교류가 협소한 지역적 한계로 경직화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재대로 광역적 수준에서 실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주민의 참여 폭 또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광역적 수준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더라도 얼마든지 앞으로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장치만 마련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박동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방안”(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2차정책토론회, 1995.8.7), 17쪽).

7. 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와 運營

○ 동아일보 사설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유력한 학부모나 지역인사도 좋겠으나 학교가 비교 육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전문가도 다수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의 사친회처럼 공직자나 유수한 민간기업의 간부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② 운영위가 학교 발전기금에 충당할 기부금을 모으고 운용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다수가 소액씩을 자주 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학교자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부모나 지역인사가 기부금을 낼 때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과정에서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③ 이밖에 운영위원회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립 초·중·고교에도 이 기구를 의무화하거나 강력히 권장했으면 한다. 운영위는 학교자치 및 교육활동에 큰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설립자의 전횡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동아일보, 1995.6.4, 3면).

○ 조선일보 사설

교육자치제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참여가 봉쇄된 상태에서는 완전한 교육자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이 조직이 뿌리를 내리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① 우선 국공립은 의무, 사립은 권장사항으로 한 조치가 타당한지 어떤지부터가 의문점이다. 명분상으로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지만, 평준화 지역내 중고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공립과 구별되기 어려운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다. ② 학교장 및 사학의 경우는 재단측과의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운영위를 구성할 경우 법인과 학교장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이에 귀속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과제에 직면할 듯하다. 이에 대비해 사립의 경우는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지만 일단 구성될 경우 공립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려 할 것이 자명하다(조선일보, 1995.6.4, 3면).

○ 세계일보 사설

①학교운영위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업무중 많은 업무를 단위학교에 위임해야 하고 현재 세목을 정해 지급하는 학교예산을 단위학교에 완전위임해야 할 것이다. ②학교운영위가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에 의해 장악되거나 임기제교장의 지휘력을 지나치게 위축시켜서도 안된다. 시범운영기간을 1학기 더 늘리더라도 운영상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야 할 것이다(세계일보, 1995.6.21, 3면).

○ 최희선(인천교육대 교수)

①학부모 40%, 교사와 동문대표 등 각각 30%씩의 구성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학교실정에 따라 융통성을 주어야 할 것이다. ②그리고 위원장은 제한없이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원칙이다(최희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5.31 교육개혁안 구체화를 위한 공청회, 1995.6.20, 지정토론발표).

○ 이은옥(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단위학교 교육자치의 핵심주체」로 보는 한 이 위원회를 국·공립 초·중·고교뿐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이은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5.31 교육개혁안 구체화를 위한 공청회, 1995.6.20, 지정토론발표).

○ 전풍자(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①학교운영위의 설치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차등을 두고 있다. 국공립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사립학교에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이 교육공급자 중심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바뀐 만큼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②학교운영위의 기능도 제고되어야 한다. 이제 학부모들은 「돈만 내고 관리하는 역할」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의결기능을 강화하자는 얘기다. 특히 사

립학교의 학교운영위는 자문기능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국·공립과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③또한 학교운영위에 사회적 안목과 의식있는 유능한 학부모들이 참여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전풍자, “학교운영위설치안을 보고”, 중앙일보, 1995.6.8, 18면).

○ 정유성(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학교운영위원회가 초기에는 과거 육성회를 답습해 학교와 일부 학부모간의 담합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운영위원회 대표자 선출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②또 육성회법이 있듯이 학부모협의회법, 교사협의회법을 제정해 학부모와 교사의 회의 결과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동아일보, 『아이들을 입시에서 풀어주자』(동아일보 기획연재), 1995.7.10, 8면).

○ 정갑영(연세대학교 교수, 경제학)

학교운영위원회의 초기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시행착오를 감수하더라도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①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익성을 대표하는 인사들, 즉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②또 운영위원회가 명목 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과 이행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동아일보, 『아이들을 입시에서 풀어주자』(동아일보 기획연재), 1995.7.10, 8면).

○ 김명신(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상임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시민들이나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단위 학교 운영 과정을 함께 만드는 광장이다. 학부모들의 뜻은 교장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교사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압력기관으로서가 아니라 협력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학부모의 치맛바람, 이기주의, 경쟁심리 등은 진정한 교육 참여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니다.

①중요한 것은 대표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는 전체 교사회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학부모회는 학급 학년 전체로 이어지는

대표 선출방식이 필요하다. ②학부모 대표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환권을 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③운영위원회는 종합생활기록부 제도의 정착과정에도 참여해야 한다. 종합생활기록부를 공개적으로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때 조정 중재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그 적합성을 평가하는 소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겠다. ④그동안 숱한 비리들을 노출해온 사립학교는 폐쇄적인 학교운영에서 많은 문제가 비롯됐으므로 사립학교에도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공공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도록 법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⑤운영위원회는 자체 예산을 두지 말고 철저히 봉사기관이 되도록 하며 남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외국처럼 회의를 저녁 시간대로 잡는 것도 필요하다(김명신, 『학부모의 교육개혁 참여·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동아일보·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 제7차 시민포럼, 주제발표, 1995.7.24).

○ 김두루한(장충중학교 교사)

이제까지 대다수 평교사들은 단위학교운영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①교육개혁안에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설치는 무엇보다도 교무회의를 의결 기구화한다는 전제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가 교장의 독단적 지위강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이는 필요하다.

②교무회의와 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도·후원관계다. 학교운영의 모든 사안들은 일차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들이 심의·의결해야 마땅하다. 학부모가 조직적이고 주체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공동의사결정자로 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③동문이나 지역인사까지 참여하는 형태가 되려면 학교운영위원회보다는 학교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각 부문별 회의결과를 교무회의가 수용하는 형태가 옳다고 본다(김두루한, 『학부모의 교육개혁 참여·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동아일보·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 제7차 시민포럼, 토론발표, 1995.7.24).

○ 박도순(고려대 교수)

①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적용되는 교육행정기관의 지침이나 규제를 없애고 학교단위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 ②교장·교사

초빙제의 경우 교육청과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간 역할 갈등이 우려되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외부인사가 많을 경우 현직교사에 대한 불신과 교권침해, 교원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교장·교사 초빙제는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고 격차도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뿐아니라 고교평준화 정책의 철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더라도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박도순, 「교육개혁방안의 허와 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 토론회, 1995.7.7., : 세계일보, 1995.7.11, 14면).

○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전국 1·2급 정교사 1천7백7십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①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응답비율이 의결기구: 13.5%, 자문기구: 39%, 의결 및 자문기구: 47.5%이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장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7.1%이다. ③교사·교장초빙제와 관련하여 응답교사 중 65.7%는 초빙교장의 교직경력 등 자격제한에 반대(찬성 30.3%)했으며, 초빙교사가 되기를 원하거나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응답(36.7%)보다 「되기 싫다」는 응답(57.5%)이 높았다(한국교육개발원, 「전국 14개 연수원 연수 대상 1·2급 정교사 1천7백7십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중앙일보, 1995.9.7, 13면).

○ 강무섭(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발전연구본부장)

(i)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시범위

국·공립 초·중·고교에 운영위를 설치하고 사립은 설치를 적극 권장하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운영위를 설치토록 한다.

(ii)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의 선출방법·자격

①위원 구성비율을 학부모 40%, 학교장포함 교사 30%, 교육행정기관인사 지역인사 30%로 하고 위원 정수를 학교규모에 따라 10~20명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다.

②학부모·교사가 직접 뽑는 학부모·교사위원은 「선출관리 위원회」가 선출 업무를 맡되 교사위원은 학교사정에 밝은 교원이 선출되도록 교육 경력 및 당

해 학교 재임기간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국민학교 위원의 경우 임기 2년, 중·고등학교 위원의 경우 임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기타 위원은 동문회·교육청·지역 경제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교장 및 선출위원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위원은 특정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가 교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iii)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학교운영위원회는 초기에는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며, 동의원회가 성숙 정착되어감에 따라 의결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②학교운영위는 학교장 및 교사초빙을 위한 「학교장·교사추천위원회」를 구성, 학교운영지원비 및 발전기금(기부금)의 조성·징수·관리, 방과 후 유상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여부·내용 및 비용에 대한 의결기능을 갖도록 한다. 학교예산·결산, 선택교과 및 특활프로그램의 선정, 학교현장 및 규칙의 제정,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청원사항(예컨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여부, 국·영·수 등 주제과목의 특별과외운영)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며 그 밖의 주요사항(예컨대, 교복선정, 도서선정, 급식내용, 운동회실시일 등)을 자문하도록 한다.

(v)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의 권한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예컨대, 관할 교육청에 설치하는 중재위원회, 교육위원회 등)를 두도록 한다. 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의 심의·의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iv)안건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 :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히 신중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한다.

(강무섭,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5.31교육개혁안 구체화를 위한 공청회, 주제발표, 1995.6.20, 18~32쪽).

○ 교육부

(i)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범위

국 · 공립 초 · 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립학교는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ii)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출방법 · 임기 등

① 위원 정수 및 구성 : 위원정수는 7~15명, 구성비율은 학부모 40~50%, 학교장(당연직)을 포함한 교원 30~40%, 지역사회인사(교육행정기관, 교육 전문가, 동문대표, 기업인 등) 10~30% 범위내에서 학교규모, 지역특성, 학교급, 계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선출방법 및 임기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선출(직 · 간선)하며, 교사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하고, 지역사회인사(동문대표는 동문회, 교육행정 기관 인사는 소속기관의 장, 기업인은 기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을 것을 권장 함)는 학교장과 학부모위원 및 교사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하도록 한다. 1년 임기이며 2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총 3년).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각 1인씩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연임할 수 있다.

(iii)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학교장은 심의를 거친후 시행한다. 제도 정착에 따라 심의사항을 확대한다.

-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 · 개정
- 학교의 예산 및 결산
- 선택교과 ·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2종교과서 선정
- 방과후 또는 방학중 유상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 극기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 학교 급식내용, 급식품의 선정 · 조달방법, 급식비 결정 등 학교급식 관련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
-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청원 심사, 학교운영발전기금 등의 모금 및 관리를 한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학교는 “육성회”를 폐지하고, “육성회비”는 “학교운영지도비”로 대체한다.

(iv) 회기 · 안건의 발의 · 의결정족수 : 학교운영위는 1년간 30일을 넘지 않는 정기 · 임시회기중 학교 예 · 결산 등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학교장 또는 재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된 안건을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 결정한다.

(v)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령 · 조례 ·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 5.31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실시 지침」 중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1995.8)

III. 立法方向

1. 各界意見의 檢討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설정에 있어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에 대한 각계의견을 종합 ·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教育委員會의 性格과 權限

이는 어디에다가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떠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분야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가) 교육위원회의 성격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교육기능이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으로 양분되어 지방교육조직인 지방의회(의결기능), 교육위원회(의결기능), 교육감(집행기능)에 분산·운용되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한 의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상호갈등·비효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의결기능·집행기능의 유무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크게 (i)의결기관화하는 방안과 (ii)집행기관화하는 방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i)은 다시 ①지방의회와 분리·독립된 의결기관으로 하자는 견해, ②지방의회와 분리·연계된 의결기관으로 하자는 견해, ③지방의회의 한 분과위원회 형태로 통합하자는 견해로 나누어지고, (ii)는 교육감과 통합하여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분리·독립된 합의제·집행기관으로 하자는 견해이다.

(i)의 ①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기능을 배제하여 교육위원회가 지방행정으로부터 완전 독립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최종적인 의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상호 독립·대등한 관계를 가진다는 입장에 서는 것이고, ②의 경우는 현행의 의결기능 이원화를 유지하는 입장이며, ③의 경우는 지방의회로 의결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기능의 이중성을 해소하고 교육재정이나 다른 지원문제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긴밀한 관계속에서 지방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본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정부의 사무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소속시키면서도 기능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는 위원의 절반을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하며 나머지는 교육전문가로 선임하자는 의견, 나아가 교육담당 부시장제의 도입까지도 거론하는 의견이 있다. (ii)의 경우는 교육위원회의 기존의 의결기능을 배제하고 교육에 관한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견해로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하겠다. 기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와 분리된 의결

기관으로 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문교사회분과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나) 교육위원회의 권한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교육사무에 관한 조례제정, 예·결산, 특별부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권, 지방교육청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감사권, 시·도 교육정책과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방향 결정권 등을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가가 문제로 교육위원회에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 진다.

- (i)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2항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사무에 관한 조례제정, 예·결산, 특별부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권의 향방과 관련하여 ①현재처럼 교육사무에 관한 조례제정, 예·결산, 특별부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회가 최종의결권을 가진다는 입장, ②교육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타부분과 상충되는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교육비전출금)이나 주민의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사항만 지방의회가 최종 심의·의결권(중앙에서 배정한 교육비 예산은 교육위원회가 최종 의결권)을 가진다는 입장, ③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권을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가지거나 또는 최소한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거나 동의를 얻는 정도에 그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 (ii) 지방교육청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 및 감사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으로 인한 중복심의·감사로 인한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
- (iii) 시·도 교육정책과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결정에도 교육위원회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교육기관(사립 학교 포함)의 설치와 폐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지침, 교육기관의 교원 및 직원인사의 기본방침 등에 관한 사항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추가하자는 의견들이 있다.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에 관하여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자는 견해를 제외하고는 주로 의결기관의 성격과 한계를 중심으로 의견이 나누어 지는데 논쟁의 핵심은 교육사무에 관한 권한의 범위와 행사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관이 되도록 많은 권한을 위임 내지 부여하자는 주장을 살펴보면,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의회의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배제하여 완전 독립한 의결기관으로 하자는 주장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기능을 배제(그 범위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권한의 범위는 실질적인 의결기관으로 하자는 견해와 독립적 의결기관으로 하자는 견해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 教育委員會의 構成 및 教育委員의 選出方式 · 資格

(i) ① 교육위원회의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현행(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처럼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자(전문직)와 비경력자(비전문직)을 각각 1/2씩 유지하자는 견해, 교육위원정수의 1/2 이하를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하도록 하자는 견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교육위원겸직을 주장하는 견해는 지방의회에 교육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또는 통합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방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맺어 교육재정을 비롯한 지방교육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를 얻으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위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③ 자치구수와 교육청수라는 지역별 정수배정기준의 이중성을 시정하여 지역규모인 자치구수 또는 인구수를 정수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일반적이며, ④ 일부 시·도의 경우 교육위원수가 너무 많거나 적어서 교육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주어 역기능이 크므로 적정한 선에서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고, 그 인원으로 7~15인 또는 10~20인이 대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ii) 현행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시·군·구 의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시·도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간접선거방법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1·2항). 이에 대해서 ①주민이 직접 선출하자는 견해와 교사들이 선출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고, 간선제를 하되 ②현행 제도상의 기초의회 추천없이 시·도의회에서 직접선출하자는 견해, ③시·도의회에서 선출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이나 시·군·구별 학교운영위원회협의체의 추천 또는 정수의 일부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복수추천 등을 받도록 하자는 견해, ④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각 직능대표별로 추천을 받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견해, ⑤기타 시·군·구도 교육자치를 한다면 시·군·구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으로 하고 시·도 교육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선출하거나 시·군·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자는 견해, 시·도의원이 교육위원을 겸직한다면 비례대표제를 활용하여 교육후보를 미리 지명하여 유권자가 선택하도록 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요컨대 교육위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시·도의회의 선출, 주민직선, 시·도지사의 임명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어도 현행의 이중간 선제만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 하겠다.

(iii)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9조에서 교육위원의 자격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①현행법상의 교육전문가 교육위원의 자격인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과 관련하여 ②교육위원 자격에 경력자격을 두지말자는 의견, ⑥요구경력년수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반대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⑤경력분야를 확대하여 예컨대 교육연구경력 등 다양한 교육관련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고, ②교육위원의 겸직금지조항과 관련하여 ④현직 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참여를 허용하자는 의견, ⑥사설학원의 경영자와 교육관련영업종사자,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의 교육위원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다. ③기타 일정한 전과경력자, 5년이내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판여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은 교육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위원 연령에 상한선을 두어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다.

(3) 教育監의 選出方式 · 資格

- (i) 교육감 선출방식 : 현재 교육감은 입후보나 추천없이 교육위원회의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1·2항). 이러한 선출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①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입후보, 추천, 추대 등 어떤 형태든 후보등록이나 소견발표 또는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자는 견해, 교육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견해, ②시·도의회가 선출하되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거나 시·도지사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견해, ③주민직선으로 하자는 견해, ④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견해로 나누어 진다.
- (ii) 교육감 자격 : 교육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교육경력·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에 대해 ①학식과 덕망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고, ②교육연구경력자도 포함하자는 견해, ③요구 경력년수를 15년으로 하고 있는 현행규정에 대해 25년 정도로 강화하자는 견해, ④대학교수보다는 보통교육분야의 경력자를 선출하는 것이 업무의 성격상 타당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4) 地方教育財政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재정확충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이 동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i) 지방교육재원 총규모의 빈약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확충 등 획기적 조치로 GNP의 5%수준으로 교육비를 상향 확보하자는 의견,
- (ii) 지방교육재정을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의한 보조금 위주가 아니고 지방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지방교육세를 신설하며 지방교육세는 지

방교육양여금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iii)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 한계를 법제화하여 ①지방재정의 일정비율을 교육비로 전입하며 직접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군·구 자치구에 '학교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의견, ②교육부지확보 의무를 부과하자는 의견, ③공립중등교원봉급부담을 확대시키자는 의견,

(iv) 각급학교가 자율협찬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지방교육재정의 지원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중대하는 한편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여도를 높이고 교육사업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5) 地方教育行政機關의 組織과 人事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사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선임방법·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교육전문직의 보임확대 문제 등이 논점이다.

현행법은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동법 제40조 제1항)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동법 제40조제2항), 이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개정하자는 견해,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가공무원을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거나 국가공무원의 수를 최소화하여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인사의 자율성을 살리자는 견해, 시·도교육청에 두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최소화하여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6) 地方教育自治 地域單位

기초단위까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도하에서 교육자치는 광역단위까지만 실시되고 있는데 대해 ①현재처럼 광역단위에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 ②기초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 ③기초단위까지의 자치실시는 여건성숙에 따라 점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다.

①의 견해는 기초단위까지의 확대가 교육의 지역간 격차심화, 인사교류의 폐쇄성, 교육행정경비의 과다 등을 유발시킨다는 점을 논거로 하는 것이며, ②의 견해는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점을 논거로 하는 것이다. ③의 견해는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방재정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경우 기초단위까지의 교육자치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시·군·구 교육청의 통·폐합과 분리 등의 조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7) 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와 運營

올 7월에 법제화되어(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학기부터 시범 실시하게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 제도는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적용범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운영위원의 선출방식 등이 논쟁점이라 하겠다.

(i)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경우 국·공립학교의 원칙에 준하여 설치를 권장하자는 의견과 설치여부를 학교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하고 설치시 운영위원회의 구성·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등은 국·공립에 준하도록 하고 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으며, 운영위설치가 권장 또는 자율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립초·중·고교의 경우 이 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강력히 권장하자는 견해,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학교운영위설치를 원칙으로 하자는 견해가 있다.

(ii)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기능만 인정하는 견해, 심의·의결기능을 인정하고 나아가 의결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기능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과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iii) 운영위원회의 위원 대상·구성비율·임기에 대해서는 ①학부모·교사·지역인사의 비율을 각 1/3로 하자는 견해, 학부모 40%, 학교장포함 교사 30%, 교육행정기관인사·지역인사 30%로 하자는 견해, 학부모·교사·동문대표 등의 구성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학교실정에 따라 융통성을 주어

야 한다는 견해, 교사들의 자율권 보장장치 마련을 위해 교사들의 위원회 참여 비율을 30%보다 높게 해야 한다거나 학부모와 같은 40%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유력한 학부모나 지역인사도 좋지만 비교육적 운영을 막기 위해 교육전문가도 다수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②임기는 각각 위원별·초·중·고등학교별로 1년 또는 2년, 연임은 1차 또는 2차에 한해 하자는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iv) 운영위원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교사는 전체교사회에서 선출하고 학부모회는 학급 학년 전체로 이어지는 대표선출방식으로 하되 학부모 대표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환권을 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는 견해, 학부모·교사위원은 학부모·교사가 직접 뽑으며 기타 위원은 동문회·교육청·지역 경제단체·기초자치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교장 및 선출위원이 위촉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v)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한없이 위원중에서 호선하자는 견해와 교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자는 견해, 교장이 맡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vi)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자는 견해가, 회기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다.

(vii)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의 권한 사이의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가지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다.

(viii) 그 밖에 ①학교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교무회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한다는 전제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관계는 주도·후원관계이며 학교운영의 모든 사안은 일차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들이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학교와 일부 학부모간의 담합을 막기 위해 학부모협의회법·교사협의회법을 만들어 학부모와 교사의 회의결과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 ③교장·교사 초빙제는 시범적으로 시행되더라도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 ④학교발전기금은 모금 운영에 있어서 소수에 편중되지 않고 소액으로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기부과정에서 불필요한 불편을 없애고 세액공제를 제도화 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2. 立法方向

1952년에 교육자치가 실시된 이래 어언 40여년이 되었다. 특히 1991년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실질적인 시·도 단위 광역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었으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 실시역사가 짧아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일 수도 있으나 법 제정당시 여러 관련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절충·타협 입법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각자의 시각·이해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향은 획일적인 중앙통제의 틀을 벗어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행정을 효율화함으로써 일선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하 각 쟁점별로 개선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教育委員會의 性格과 權限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권한 문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체에 직접·간접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본적 과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관계 설정 여하에 관한 문제로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 침례한 쟁점사항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로부터의 교육자치의 분리·독립이냐, 분리·연계냐, 통합이냐의 문제로 그 여하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이 달라진다.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17·118조).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는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와 별개의 ‘교육자치’는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이외에 이와 별별적인 ‘교육의회’의 개념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교

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권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정착을 위한 모델로 어떤 것이 합당한지는 한국의 정치·행정문화와 국민정서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이다. 앞으로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취약한 지방교육체계를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교육행정을 지방행정으로부터 완전 분리·독립시켜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예·결산 등 모든 사항에 최종적인 의결권을 가지게 한다거나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여 한 분과위원회로 만든다거나 교육위원회를 교육감과 통합하여 합의제 집행기관화하는 방안은 새로운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보다는 오히려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지방자치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지방교육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방 교육자치의 조속한 발전·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는 현재처럼 기능하고 역할을 수행하되 위원회구성 등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한 예로서 고려할만 하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1·2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9개 항목으로만 명시하고 특히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주민부담 사항 등은 시·도 의회에 최종의결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해 시·도 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행정사무에 대해 중복감사 및 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전문가 등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의회의 교육관련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 주민대표성을 가지는 지방의회가 위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권을 가지도록 하되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사실상 존중하는 의결권행사를 하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을 고려할만 하다고 하겠다. 교육행정사무에 관한 조사·감사도 교육위원회가 수행하되,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낭비를 막고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교육기관(사립학교 포함)의 설치와 폐지, 교육과정의 운영지침, 교육기관의 교원 및 직원인사의 기본방침 등과 같은 시·도 교육정책과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된다.

(2) 教育委員會의 構成 및 教育委員의 選出方式 · 資格

(가) 교육위원회의 구성

(i) 현재 교육위원회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1/2이상)와 비경력자로 구성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민참여와 통제의 원리를 반영하여 교육위원회를 교육전문가 등(1/2이상)과 시·도 의회의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향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맺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에 있다면 단기적으로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의회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방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도의회 의원 중 일정수를 교육위원으로 참여시켜 불필요한 갈등·행정상의 낭비를 사전에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비롯한 지방교육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하겠다.

(ii) 현재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7~26인의 교육위원정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수와 인구수라는 현행의 이중기준을 버리고 지역별 인구수에 근거하여 7~15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교육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육위원의 선출방식

현행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시·군·구 의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시·도 의회

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이른바 '이중간접선거'방법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이런 선출 방식은 직접선거에 따른 과열과 혼탁, 그리고 빈번한 선거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과 낭비를 우려하여 채택한 방식이었으나 이 또한 교육전문가를 선출하는데 문제가 있고 특히 정당을 배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대체적으로 시·도의회의 선출, 주민직선, 시·도지사의 임명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적어도 현행의 이중간선제만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 하겠다.

따라서 교육위원선출에 있어서는 주민직선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는 주민의사를 바로 반영하고 교육자치의 의미를 주민에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을 고려해 보건대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하겠다. 선거인단의 구성 대상·인원·시기 등에 있어서 현행 제도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정당배경문제 등 혼탁을 최소화하며 교육의 전문성·주민참여와 통제의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지방자치와의 연계를 맺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다) 교육위원의 자격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9조의 교육위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주된 논점은 (i)경력년수 및 경력분야 확대 문제, (ii)교육위원의 겸직금지 범위문제, (iii)기타 정당경력자의 제한 문제 등이다.

(i)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8조의 교육전문가 교육위원의 자격인 교육 및 교육 행정경력과 관련하여 ①경력년수문제는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건대 적어도 10년 정도의 경력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현행법상의 10년은 비교적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②경력분야 확대문제를 살펴보면,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것이지만 특정분야의 경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제한적 규정이라 생각되며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교육·학예에 관한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령 연구경력직 등에게도 교육전

문가로서 교육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ii) '교육자치법' 제9조의 교육위원의 겸직금지조항과 관련하여 ①현직 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참여허용 문제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원임기 동안 휴직하게 하는 방법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②사설학원의 경영자와 교육관련영업행위에 종사하는 자,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교육청과 감독기관·피감독기관의 관계가 있어 행정지도 및 감독상 불편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교육위원겸직 금지조항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iii) 기타 정당경력자의 교육위원 피선자격 제한여부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을 떠난 후 일정기간은 피선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3) 教育監의 選出方式 · 資格

(가) 교육감의 선출방식

교육위원회에서 비입후보·비추천·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현행 교육감선출방식(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은 입후보나 후보추천제로 인한 선거비리를 우려하여 채택했다는 나름대로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개방과 참여라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데서 파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교육감으로서의 자질검증기회가 없다는 점, 사실상 출마가 이루어져 음성적 선거운동으로 비리조장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주민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선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상, 예상되는 문제점이 다소 있다 해도 후보등록제를 도입하되 주민대표인 시·도의원과 교육전문가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동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방안은 일정기간의 공개과정을 거쳐 입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 교육감의 자격

교육감의 지위를 단독제 집행기관으로 규정짓는 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확보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와의 관계에서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 교육감 자격요건 중 경력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교육감의 업무의 성격상 대학교수보다는 보통교육분야의 경력자를 선출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것은 법령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실제의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4) 地方教育財政

교육재원의 확충과 교육재정의 자립도 제고는 지방교육자치를 정착·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지방교육재정의 지원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은 재원구조가 취약함은 물론 재정규모도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i) 따라서 지방교육재원의 구조상 중앙정부에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그 대책으로 국세위주의 편성을 지양하여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워낙 미약하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보다 증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예산을 최소한 GNP 5%수준으로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는 방안이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i) 이러한 노력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비의 직접적인 지원이외에 학교부지의 확보·제공과 같은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 한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원들이 교육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교육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5) 地方教育行政機關의 組織과 人事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분권화가 실현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운영은 지역의 특수성,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i) 현재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0조제1·2항), 이는 국가적 통합성과 일관성의 유지 차원에서 일견 납득이 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자치의 정신에 어긋나는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교육자치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부교육감도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교육감선임방식에 따르게 되면 부교육감은 지방 공무원이 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또한 부교육감의 자격요건으로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등을 법정하고 있지 않은데 때로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교육 행정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교육감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법정화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ii) 시·도교육청의 국가공무원을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국가적 통합성, 지방재정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가능한 한 국가 공무원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인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iii) 지방교육행정은 학무행정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직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6) 地方教育自治 地域單位

현재의 시·도 광역단위교육자치제도에 대해 기초단위까지의 교육자치 확대 실시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 의욕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통제의 폭을 넓힌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재정상황,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 실시하는 경우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때 확대실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로 학교단위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게 된다면 구태여 문제의 소지를 안은 채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할 필요는 없으며 단위학교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여 최소한의 조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작은 교육청'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만약 시·군·구의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 실시하는 경우 현행 시·군·구 교육청의 통·폐합과 분리 등의 조정이 선행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7) 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와 運營

올 7월에 법제화 되어 교육부의 '시범실시 지침'따라 제2학기부터 시범 실시하게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 제도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기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운영의 주체가 학교장이냐 아니면 운영위냐 하는 점, 학교운영상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점,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사학의 경우 운영위설치시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범인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위와 재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점 등에 대해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자중심의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정착·발전을 위해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청된다 하겠다.

(i) 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중등교육의 경우 절반이상이 사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사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위 설치를 강권할 수는 없지만 설치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잇점을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고 나아가 재단과 학교운영위원회 와의 적절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ii) 운영위 기능의 설정문제는 운영위와 학교장 또는 재단과의 관계설정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교육부의 '시범실시 지침'에 의하면 운영위는 의결기능이 없이 심의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학

교장은 운영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장이 운영위의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운영위 설치와 운영의 시범 실시를 통한 제도의 정착에 주력하면서 되도록 가까운 장래에 심의대상의 확대와 의결기능의 인정을 검토하여 운영위가 발전기금 모금과 관리만을 수행하게 되는 명목기구가 아니라 의사결정과 이행에 있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운영위와 학교장간의 권한·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예컨대, 관할교육청의 중재위원회설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기능만 인정하는 것이 국공립학교와 비교해 볼 때 타당한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고, 사립학교에 운영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 역할을 어디에서 수행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교무회의, 학부모 모임, 동문·지역사회인사모임 등을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활성화하여 학교장과 재단의 전횡을 막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ii)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학교장 포함 교사·지역사회인사 위원을 구성대상으로 하고, 원정수 및 구성비율은 일정한 범위안에서 학교실정 등에 따라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위원선출방식은 학부모·교사위원은 각각 학부모·교사가 직접 선출하고 지역사회인사 위원은 동문회·기타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장과 선출위원들이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기는 각각 1~2년에서 정하도록 하며 임기가 1년인 경우는 2차, 임기가 2년인 경우는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될만 하다. 위원장은 교사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상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미 언급했듯이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지역의 특수성, 주민 참여와 통제의 원리를 반영하여 일선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제도의 발전·정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설정과 함께 지방자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행정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상호 고유성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분리·연계형을 채택하는 것이 현재의 혼란과 장애

를 극복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보완과 함께 학생·학부모·교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지역사회주민 등 관련당사자들이 지방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누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第 2 編

最近立法意見 動向 及 最新法令 紹介

I. 最近立法意見 動向

○ 분류기준표

분 야	대한민국 현행 법령 집 해 당 항 목
憲 政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統一·外交·國防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의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內務·地方行政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社會·文化·教育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產 業·經 濟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책·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農 林·水 產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建 設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科學技術·交通·遞信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環 境·保 健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法 院·法 務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2), 제9권9형사법

1. 最近立法意見 目錄

(1995.4.21. ~ 1995.6.30)

◎ 憲政	81
○ 헌법 개정의견	
◎ 統一·外交·國防	82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국적법 개정의견	
○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 개정의견	
○ 평화통일과남북화해·협력을위한보도·제작준칙(가칭) 제정의견	
◎ 內務·地方行政	84
○ 경찰법 개정의견	
○ 민방위기본법 개정의견	
○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재해구호법 개정의견	
○ 정부조직법 개정의견	
○ 주민투표법(가칭) 제정의견	
○ 지방공무원법 개정의견	
○ 지방자치관련 입법의견	
○ 효친휴가제도입관련 입법의견	
◎ 社會·文化·教育	87
○ 교육개혁관련 입법의견	
○ 교육정보화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교육환경보전관련 입법의견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견	
○ 사회보장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산업인력육성관련 입법의견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영상산업진흥관련 입법의견
 - 외국인근로자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입양특례법시행령 개정의견
- ◎ 産業 · 經濟 92
- 공업발전법시행령 개정의견
 - 리콜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세제관련 입법의견
 -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의견
 - 신용카드업법 개정의견
 - 예금자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주택할부금융제도관련 입법의견
 -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의견
- ◎ 農林 · 水產 96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 시행규칙(가칭) 제정의견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산림법 · 산림법시행령 개정의견
 - 어선의낚시객이용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환경보전을위한농산물생산및가공유통의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 建 設 98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건설업법 개정의견
 - 건축법시행령 개정의견
 -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상가입대차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안전관리체계강화관련 입법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견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의견	
○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의견	
 ◎ 科學技術 · 交通 · 電信	102
○ 교통시설설치등에관한특별예산조성법(가칭) 제정의견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의견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의견	
○ 정보화촉진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의견	
 ◎ 環境 · 保健	104
○ 노인건강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의견	
○ 식품위생법 개정의견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 의료보험법 개정의견	
○ 의료분쟁조정법(가칭) 제정의견	
 ◎ 法院 · 法務	105
○ 관세사법 개정의견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관련 입법의견	
○ 정보공개법(가칭) 제정의견	
○ 집단소송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행정서사법 개정의견	
○ 행정절차법(가칭) 제정의견	
○ 형법 개정안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2. 最近立法意見 要旨

(1995.4.21. ~ 1995.6.30)

◎ 憲政

○ 헌법 개정의견

-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허용 및 부통령제 신설 등의 개헌이 필요함. 내각제도 국민의사 반영이라는 측면과 지역주의나 남북문제 해소를 위해 갈등하는 집단들간의 수평적 권력부담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도이며, 국회는 지역갈등의 완화와 남북통일의 원활화를 위해 양원제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박기덕 세종연구소연구원,『한국의 국가전략 대토론회』).
-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보다는 4년 중임제나 내각제가 바람직함(이만섭 전국회의장).
- 한정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수정돼야 함(김윤환 민자당대표).
- 개헌은 남북통일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논의해야 함.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연방주의에 가까운 분권적 국가체계가 바람직함(성경률 한림대교수).
- 「헌법」개정이란 언제나 장기집권을 위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어 왔으며, 남북대치상태인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가 적절함(김영삼 대통령).
- 내각제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제도화·체질화 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제도임(김종필 자민련총재).
: 한국 95.4.26., 3면; 중앙 95.4.27., 4면; 동아 95.4.27., 5면; 국민 95.4.28.,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제94-1호(50면) · 제95-2호(82면) 참조

◎ 統一·外交·國防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뿐 아니라 교육기관, 상시고용자 16인 이상의 공·사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채용시험때 군필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여,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6·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2년이상 군필자는 5%, 2년미만 군필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해오던 것을 각각 3%와 1.5%로 축소하고, 8·9급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 2년 이상 군필자는 5%, 2년미만 군필자는 3%의 가산점을 주던 것을 각각 4%와 2%로 축소하며, 8·9급 지방공무원은 현행대로 각각 5%, 3%의 가산점을 주도록 함(보훈처).

: 국민 95.6.5., 2면

○ 국적법 개정의견

- 세계화시대에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 등 생산요소까지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국내유치과학자특례규정'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전문경영능력이나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해외교포까지도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경영능력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교포의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국적정리를 하지 않고서도 장기간 국내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김인중 박사 산업연구원).
- ① 「병역법」 적용 문제에 있어서 이중국적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고, ② 각종 선거법 적용에 있어서 이중국적자를 국민으로 취급해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국가공무원법」 적용에 있어서 이중국적자가 공무원으로 취임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 ③ 이중국적자가 제3국에서 부당 또는 불법대우를 받았을 때 어느 나라가 그 사람을 자국인으로 인정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④ 이중국적 허용은 해외교포들이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방문할 수 있게 하므로 국가안보 및 남북관계 법령과의 저촉문제가 제기되며, ⑤ 이중국적 허용은 자칫하면 교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여 교포사회를 분열시킬 우려가 있음. 교포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소유연한의 연장, 체류기간 연장, 외화반출을 포함한 재산권 행사

완화 등을 골자로 현행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장기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해외교포에게는 단순한 외국인의 지위와는 다른 영주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고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장희 외대 법학과 교수).

- 내국인의 외국국적 취득 허용문제는 악용할 소지가 많으므로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이미지를 홍보하며 국제간 산업기술 투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담게 될 「기업세계화지원법(가칭)」에 세계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동포에 대한 이중국적 취득을 허용하는 문안을 넣도록 함(통상산업부).
-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납세,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범죄인 인도, 출입국관리상의 애로, 중국과의 외교마찰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교포들이 국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들을 완화하고자 함(공로명 외무장관).
-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조달 및 판매능력, 여러 국가에 분산된 자회사들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구축 등을 위해서는 현지문화를 이해하고 있고 현지어에 능통한 외국인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교포들의 이중국적 취득이 허용되어야 함. 외국인의 국내취업이 쉽도록 인적교류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 파견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병역특례도 부여해야 함(산업연구원(KIET) 정책토론회).

: 한국 95.4.27., 13·14면; 한국 95.4.27., 13면

○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 개정의견

- 지금까지 탈북자들을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선별수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귀순을 원하는 북한주민들을 전원 수용하도록 하고, 탈북자귀순이 급증할 것에 대비, 해외공관 유지비와 보환경찰력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귀순자에게 지급해온 정착금, 보조금, 주택지원금 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함(통일원).

: 한국 95.6.5., 1면

○ 평화통일과남북화해·협력을위한보도·제작준칙(가칭) 제정의견

- 언론의 통일관련 보도·제작 준칙이 자율규범 차원을 넘어 법제화되어 실효성

을 가지도록 하고, 이에는 민간단체 통일운동의 취재를 경찰서 출입기자에게 맡겨 공안사건으로 만드는 폐단의 금지와 통일·북한문제 담당기자의 전문기자화 조항과 통일문제에 관한 언론사간의 과당 보도경쟁방지 조항이 필요함(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기자협회·한국프로듀서연합회).

- 보도·제작준칙이 언론인 스스로 지키는 규범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 대표로 '통일공정보도제작위원회'를 구성해 감시하거나 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함(김택환 언론연구원 연구위원).

: 한겨례 95.5.31., 16면

◎ 内務·地方行政

○ 경찰법 개정의견

- 지방선거후 지방경찰청을 민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둘 경우 국민의 생명보호 등 경찰임무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워져서 지방정부와 경찰청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지방비 지원이 단절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둔다"는 현행 「경찰법」 제2조제2항의 일부를 삭제하고, 지방선거후 부지사(차관급)와 지방경찰청장의 격을 맞추기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등 6개 지방청장의 직급을 치안감(현행 경무관)으로 높일 방침임(경찰청).
: 중앙 95.5.7., 1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제94-2호(81면) 참조

○ 민방위기본법 개정의견

- 최근 대학원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일반대학원생들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민방위편성에서 제외하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53개 공공직 업훈련원중 1년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하고, 20~50세의 남자로 민방위대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편입하거나 전입 및 퇴직에 따라 편입에서 제외될 경우 주소지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던 민방위대 편성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동장이나 직장민방위대장이 직권편성토록 함(당정).

: 경향 95.6.18., 2면

○ 자연공원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의견

- 기존 「자연공원법시행령」과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이 스키장과 골프장을 '국·공립공원내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국·공립공원의 보전원칙에 어긋나므로 국·공립공원 지역에는 스키장과 골프장 등 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해야함(윤창원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 보존지구로서 관리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청으로 개편하거나 환경부에 '자연공원국'을 설치해 관리를 전담하게 하고, 공원시설도 자연학습을 위한 시설로 제한해야 하며 스키장·골프장·콘도미니엄·호텔 등 위락시설의 건립은 규제해야 함(이경재 서울시립대교수·옹용생태연구회장).
-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립공원을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능 강화는 지방자치 정신에 배치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음(이주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 「자연공원법」은 개발에서 보존으로 그 방향성이 바뀌어야 하고, 공원시설인 도로, 삭도, 궤도, 숙박시설, 체육·휴양시설 등의 허용기준은 엄격해야 하며, 골프장과 스키장은 국립공원내 어떤 곳에도 설치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이진예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
- 스키장과 골프장을 국·공립공원내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국·공립공원의 보전원칙에 어긋나므로 관련항목의 삭제가 요망됨(환경부).
: 서울 95.4.26., 10면; 조선 95.4.21., 37면

○ 재해구호법 개정의견

- 대형사고 발생시 천재의 경우만 중앙정부가 보상을 할 수 있고 인재는 아무리 대형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충분한 법적보상을 보장받도록 해야함(민자당).
: 경향 95.4.30., 2면

○ 정부조직법 개정의견

- 인체에 유해한 각종 식·의약품의 제조가 계속 늘어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과 더불어 더욱 증가하는 수입식품과 약품의 검역 및 관리 부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식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 심사를 전담하고, 식품검사소를 설치하여 수입식품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소속 약정국, 식품국과 국립보건연구원을 통합해 별도의 독립청으로 '식품의약품관리청(가칭)'을 신설하기로 함(당정).

: 동아 95.5.12.,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1면) · 제10호(77~78면) · 제12호(76면) · 제13호(57면) · 제94-2호(82면) · 제94-6호(84면) 참조

○ 주민투표법(가칭) 제정의견

- 「지방자치법」은 직접청구 제도로서 주민투표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을 위한 「주민투표법(가칭)」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주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책임을 물어 주민이 직접 해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와 주민들이 자신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조례의 제정을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안 제도를 실시해야 함(권장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책팀실장).

: 국민 95.6.3.,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5호(94면) 참조

○ 지방공무원법 개정의견

-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호견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반면,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하는 권한인 선결처분권도 확대하기로 함(민자당『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 서울 95.5.7.,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77~78면) 참조

○ 지방자치관련 입법의견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확충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 지방재정금 설립 등을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의회에 기체승인권을 줌으로써 집행기관의 무리한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지방
채 남발을 억제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관리상태를 견제·감독하도록 함
(조일홍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 한겨레 95.5.21., 1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6호(85면) 참조

○ 효친휴가제도입관련 입법의견

- 최근 부모 살해와 같은 폐륜범죄가 잇따르는 등 효사상이 날로 퇴색되는 사회
분위기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효친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부모나 배
우자의 부모가 근무지로부터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을 경우 기관장 재량하에 휴
가기간을 하루 늘려 이틀씩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부모가 작고한 공무원
에 대해서는 형평을 고려, 제삿날에 효친휴가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임(총무
처).

: 중앙 95.5.8., 1면

◎ 社會 · 文化 · 教育

○ 교육개혁관련 입법의견

- 교육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학교예산 및 결산, 선택교과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선정 등 교육행정과 내용에 있어 전문적 의견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기능을 발휘하고, 학교현장, 학교규칙의 제정 등 사안도
심의하며 학교운영제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함(중앙일보 기획 · 연
재).

- 앞으로 도입할 '학점은행제'는 대학 · 연수원 · 학원 등 사회교육기관에서 과정
을 이수할 때마다 딴 학점들을 은행에 저축하듯 누적적으로 기록하여 일정 기
준이 되면 학위를 준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①고등교육기관간의 편 · 입학
제도 확대와 시간제 등록제 · 최소전공인정제 등 학점은행제가 용이하게 운용
되도록 하는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지고, ②현재의 독학사 제도와 방송통신대
학, 학원 및 각종 직업기술 교육기관들의 운영, 평가, 인정 및 학점의 누적관

리, 학위수여 등 모든 학점운영제 관련 업무는 신설될 '교육과정평가원'이 관장하도록 하며, ③ 이를 위해서 '학점은행제'의 도입에 따른 학위·자격증을 수여하는 다양한 기관간 교육내용의 질적수준 유지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고, ④ 자유로운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현행 대학 입학제도와 관련하여 고등 교육기관간, 대학과 사회교육기관간의 상호 편·입학과 학점 인정에 관한 정책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중앙일보 기획 연재).

: 중앙 95.6.1., 19면; 중앙 95.6.15., 1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84면) · 제94-5호(96~98면) · 제95-1호(85면) · 제95-2호(89~90면) 참조

○ 교육정보화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교육개혁이 제시하고 있는 평생학습을 위한 여러 제도와 방안은 멀티미디어 등 의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나 라디오나 TV방송 또는 인쇄물을 통해 실시하는 교육은 그 효과가 제한되므로 멀티미디어 PC, 양방향 TV, VCR, 화상회의 시스템, 정보통신 등과 같은 첨단매체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교육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교육정보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교육정보화 실천에 필요한 각종 지원 및 조성활동을 촉진 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촉진법(가칭)」을 제정해야 함(한국교육개발원).

: 중앙 95.6.15., 13면

○ 교육환경보전관련 입법의견

- 학교주변의 대형건물 신축과 도로횡단으로 인한 교통체증, 소음공해, 전파방해 및 퇴폐유풍업소의 범람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피해방지 노력이 절실히 에 따라서 「교육환경보전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여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견

-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여성의 키나 용모 등 신체조건을 따지지 못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 여성근로자의 배우자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관계법의 개정시 60일로 되어 있는 출산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12주로 확대하고 태아검진휴일제, 출산간호휴일제를 신설하는 등 모성보호규정을 강화하도록 함(이형구 노동부장관).

: 서울 95.4.28., 2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6호(86면) 참조

○ 사회보장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 삶의 최저수준마저 침해됐을 때 국가에 대해 이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주고, 국가는 이들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함(강수립 민주당의원).
 - 복지정책을 법적인 규정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복지현실의 개선은 어려우므로, 사회보장권을 청구권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현실적인 차원에서 필요함(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한겨레 95.5.7., 13면

○ 산업인력육성관련 입법의견

- 생산적 근로자의 이탈방지와 기업의 산업인력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산업인력개발체계구축방안은 ①산업인력개발체제개편 및 상호연계·보완기능강화를 위하여 인력개발정책이 국가 전체의 교육훈련체제개편의 틀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되, 일반교육과정과 대칭되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②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능사보로 입사한 근로자가 기능사·기능장 등 고급인력으로 기술·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훈련과정을 상설하며, 기능대학의 다기능 기술자과정 졸업자에 대한 전문대학력을 인정하고, 유급교육훈련, 휴가지원, 50세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수강료지원, 이공계진학자 학비대출 등 근로자의 자기계발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며, ③고용보험제실시에 따른 직업훈련기능을 강화하여 농산물개방 등에 따른 이농인력에 적합한 훈련직종을 개발하고 여유시간이 없는 특수직종 희망자들의 자격취득을 위한 단기 공개강좌를 실시하는 한편 이동직업훈련·통신훈련 등 다양한 강좌를 개발하고, ④직업훈련체제를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기업들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이 기능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⑤기능인력장려

사업을 확대하여 기능훈장 신설 등 기능인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들이 창업자금을 마련할 때 금융지원을 해주며 주택분양 등에서도 우대하고, 생산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행인사·보수체계 개편도 추진하도록 함(중앙일보 해설).

: 중앙 95.5.19., 2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성폭력을 포함한 어린이학대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짐에 따라 교과 과정에 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함(이기범 숙대교수).

: 중앙 95.5.19., 17면

○ 영상산업진흥관련 입법의견

- 현재 영상기기 제조업체나 정보처리업 등 극히 일부 영상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그래픽 등 영상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특히 영상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영상소프트웨어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및 법인세가 20% 감면될 수 있도록 함(통상산업부).

: 한국 95.5.28.,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제94-1호(60면) 참조

○ 외국인근로자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인력난을 겪고 있는 단순업종에 한해 해당기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고용계약기간은 1년이내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자는 계약체결때, 근로조건, 가족동반 금지, 단체교섭·행동 금지, 계약내용 변경금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적정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위해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를 설치, 매년초 외국인 근로자 고용상한선을 업종별·기업 규모별로 공표하도록 하고, 개별사업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용허가 신청을 하고 고용상한선을 허가받아 국외에서 직접 또는 공공단체·비영리법인을 통해

인력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노동부).

: 95.4.25.,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제95-1호(87~88면) · 제95-2호(93면) 참조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청소년의 새로운 놀이문화로 정착된 영상물의 심의는 공정성 · 정확성과 더불어 신속성이 확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검색 및 자료수집 기능의 강화를 위한 수용태세가 선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미비한 법률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윤상철 공연윤리위원회장).
- 관계부처 및 업계의 반발에 부닥치자 그 규제대상을 영화 · 음악 · 오락물 등이 수록돼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불건전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 강화를 명분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비디오물에 포함시켜 그동안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심의해 왔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은 ①컴퓨터프로그램 제작업자는 일정 시설을 갖추고 문화체육부에 등록해야 하며, ②등록제품의 제조수량에 따라 일정액을 유통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하고, ③제품 제작때는 물론 공고 · 선전물 게시에도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④전년도 사업실적 및 시설현황 등을 문체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 등의 의무조항을 담고 있어서 국가차원의 중점육성분야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이같이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적용을 받게 할 경우 영세 소프트웨어업체들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게 됨(소프트웨어 업계).
- CD롬, 비디오CD 등 새로운 영상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물이 윤리적으로 합당한지를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음반 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문화체육부).
- 모든 소프트웨어가 비디오물로 분류돼 일일이 심의를 받게 된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임(정보통신부).

: 중앙 95.5.5., 5면; 중앙 95.6.11., 9면; 조선 95.6.20., 1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제94-6호(93면) · 제95-2호(93~95면) 참조

○ 입양특례법시행령 개정의견

- 장애아동 등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아 · 미숙아를 입양하는 가정

에 매달 6만5천원 정도의 양육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보험의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입양 알선기관에서 보호하는 국내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되기 전 가정적 분위기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를 도입, 이들을 일시 위탁받아 기르는 가정에 기초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함. 해외입양시는 홀트 등 외국입양기관이 현행 국적정리 등 단순처리 뿐 아니라 입양가정조사·입양아동 사후관리 등도 맡도록 의무화, 부실가정의 입양을 막기로 하고, 해외입양아들이 모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입양기관들이 입양협약기관과 함께 해외입양자에 대한 모국방문·어학연수·뿌리찾기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함(보건복지부).

: 중앙 95.5.9., 3면

◎ 產業 · 經濟

○ 공업발전법시행령 개정의견

- 공업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조업중심에서 정보서비스 및 환경관련 업종으로 확대하고, 그 적용대상에 환경설비제조관련업, 기계장비임대업,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시장조사업·패션디자인업·경영상담업 등의 서비스업, 영상산업, 특정폐기물 처리 및 폐수처리업 등 6개 업종(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기준)을 추가함(통상산업부).

: 경향 95.4.25., 9면

○ 리콜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공산품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전량을 공개 수거하는 리콜(Recall)제가 도입 준비작업에 착수중으로 대상품목 및 기준·절차 등 초안을 마련한뒤 재정경제 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재 자동차 일부에 대해서만 비공개적으로 시행된 것을 가전제품을 비롯, 대부분 공산품으로 확대하기로 함(소비자보호원).

: 경향 95.6.8., 9면

○ 세제관련 입법의견

- 근로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94년 세법개정때 확정된 근로소득세의 공제액 (95년=6백90만원, 96년=8백만원)을 상향조정하거나 96년으로 예정했던 근

로 소득공제액(8백만원) 인상시기를 금년내로 앞당기며,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현행 1천2백만원에서 과세특례 수준인 3천6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기간을 당초 방침인 3~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임(당정).

: 조선 95.4.24.,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52면) · 제11호(88~89면) · 제94-1호(68면) · 제94-3호(101면) · 제94-5호(108~110면) · 제94-6호(97면) · 제95-1호(91면) 참조

○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보호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원의 시정조치 권한을 강화하며, 금융 · 의료 등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분야의 보상 기준을 따로 제정해 피해보상을 하도록 함(재정경제원『소비자보호종합시책』).

: 서울 95.4.22., 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68면) · 제94-5호(110면) · 제95-2호(101~102면) 참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의견

- ① 개인의 불량거래 정보와 대출정보를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을 통해 금융기관간에 한해 상호 활용이 가능하게 하고, 개인 및 기업도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개인의 불량거래 정보 등 신용조사를 의뢰하거나 신용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나, 불량거래 정보이외의 개인 정보를 조사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게 하여 개인 및 기업들의 신용정보가 손쉽게 이용되고,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② 이에 따라 △연체 · 부도 · 대지급 등 신용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되는 불량거래 정보, △대출 · 당좌예금 · 신용카드 개설 및 해지여부와 관련된 개인정보, 법인의 대출 · 보증 · 담보제공 · 카드거래실적 등 거래상황 정보, △주주구성,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법인정보가 신용정보업자와 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공개되며, ③ 백화점, 할부판매회사가 영업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하고, 개인의 신용과 무관한 사생

활관련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인신용정보는 당사자와의 신용거래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등의 목적으로만 제공 또는 이용하도록 하고, ④같은 업계끼리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할 필요가 있는 백화점 등 일반기업들도 업계에서 설립한 협회 등을 통해 거래고객의 불량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⑤그동안 은행연합회가 집중관리해온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정보를 추가하여 당사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재정경제원).

-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 이용을 확대, 예기치 않은 금융사고를 막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금 1백억원 이상으로 일정기준을 갖춘 업체에 한해 신용정보사업을 허가하여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등을 하도록 할 것이나, 국가안보, 기업비밀,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또는 조사를 금지하고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거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재정경제원).

: 조선 95.5.25., 8면; 동아 95.5.25., 13면; 국민 95.5.25., 8면

○ 신용카드업법 개정의견

-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처럼 주택을 할부로 구입하는 주택할부금융을 시행하여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돋고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로 함(건설교통부).
: 동아 95.4.27., 12면

○ 예금자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감독원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 보호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금융분쟁을 전담하도록 하고, 은행 경영이 어려워져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기 힘들 때 일정한도 (미국의 경우 10만달러) 이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예금자 보험제도를 도입하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이 곳에 돈을 맡긴 국내고객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재정경제원).
: 중앙 95.6.15., 2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5-2호(102~103면) 참조

○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유통단지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50% 감면하고 유통단지 분양 때 물어야 하는 특별부가세도 절반으로 줄이며, 유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50% 감면하기로 함. 현재 종합토지세를 부가할 때 '종합합산' 대상인 유통단지의 토지를 별도합산대상으로 변경해 세부담을 줄이고, 민간 기업들이 유통단지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 동아 95.5.16., 12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73면) · 제94-2호(99면) · 제94-5호(111~112면) · 제95-2호(103~104면) 참조

○ 주택할부금융제도관련 입법의견

-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고 주택후분양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현행 「신용카드업법」의 할부금융업 대상에 주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할부금 대금금리를 시장실제금리인 연 15%선으로 하고 할부기간은 자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3~10년으로 하고, 할부대상은 주택은 공동주택과 준공된 주택 가운데 면적 1백m² 이하로 제한하고, 대상자도 무주택가구주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한정하기로 하며, 사업주체는 팩토링회사, 주택공제조합, 주택건설업체로 하고 채권발행 등을 통해 할부금융자금을 조성하도록 할 방침으로 채권발행한도는 공제조합이나 팩토링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배까지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주택건설업체는 자본금의 2배까지로 제한하기로 함(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 세계 95.4.27., 8면

○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의견

- ①농산물분야에서도 가격파괴가 확산되도록 현재 2천여개에 달하는 농협의 우편창고시설을 회원제창고형 점포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프라이스클럽'과 같은 가격파괴형 할인매장을 자연녹지에 설립할 수 있게 하며, 창고형할인매장 · 백화점 · 도매센터가 개설허가를 받을 때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이나 유통부가가치통신망(VAN) 등 유통정보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

고, ②수입품과 국산품의 가격경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98년까지 부분적으로 해제될 수입선다변화품목중 가전 내구소비재 등 생필품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③연간 60일, 1회 15일 이내로 제한된 백화점의 할인특매기간을 연장하며, ④96년부터 국가기관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자격증을 주는 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육상·해상·항공화물의 유통업무를 일괄처리하는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⑤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도소매업에 대한 허가대상면적을 현재 1천평방m에서 2천평방m로 상향조정하고 도매센터의 요건중 매출액의 100%를 도매실적으로 채우도록한 규정을 없애 도매시장에의 진입을 활성화하기로 하며, ⑥전속 대리점제도 대신 한 대리점이 여러 제조업체에서 같은 품목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전문 유통업체 위주로 유통구조를 개선함(재정경제원).

: 한겨레 95.4.30., 9면; 동아 95.5.18., 1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6호(101~104면) 참조

◎ 農林·水產

○ 농어촌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가칭) 제정의견

- 도시인도 한계농지정비지구안에서는 4백50평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분이 한계농지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규정하고, 한계농지는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가파르거나 농지개량조합구역밖의 농지중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지로 규정하며,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어촌에 필요한 농산물집하장, 미곡종합처리장, 농기계수리센터, 농어촌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지정리로 환지를 받게 되는 면적이 3백평 이하인 경우는 농지규모화를 위해 금전으로 청산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가칭)」을 입법예고 함(농림수산부).

: 한국 95.5.11., 8면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농어촌 주택의 품질 개선방안을 수립, 지역특성에 알맞은 표준설계도를 개발

하기 위해 높이제한 완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촌주택 현대화를 위해 각 부처의 시책을 종합, 일원화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킴(내무부).

- 수도권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에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 참여하는 농어촌 주택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가칭)」을 제정하여 장기저리로 융자되는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의 지원면적을 현재 $85m^2$ 에서 $1백m^2$ 로 넓히고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농어촌 지역은 내무부장관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를 농어촌진흥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농어촌주택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건설업체에도 사업자금의 일부를 직접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 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빈집은 시장·군수가 철거·개축 등의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내무부).

: 국민 95.4.22., 23면; 경향 95.6.25., 3면

○ 산림법·산림법시행령 개정의견

-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나뉘어 있는 산지를 이용 목적에 따라 생산·공익·산업 임지로 전면 개편하도록 함(경제장관회의).
- 모든 산지를 경사도와 임목본수도(나무가 얼마나 촘촘히 심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에 따라 보전·준보전 임지로 나누는 기준의 구분체계가 불합리하여 실제로 해마다 3천ha 이상의 보전임지가 전용돼 왔으므로, 산지이용 구분체계를 기능에 따라 공익·생산·산업 임지 등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함(산림청).
- 산림청의 「산림법시행령(안)」이 담고있는 산지이용구분체계에서 자연생태계 보호지역과 녹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중요한 업무가 지자체와 소유주의 반발로 사실상 불가능함(환경부).
- 산림청의 「산림법시행령(안)」은 전체 산림의 75%인 보전임지를 공익임지와 생산임지로 세분, 생산임지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생산임지개발로 보전림이 전체 산림의 20.7%로 줄어들게 될 것임(환경연, 경실련, 배달녹색연합).
- 소유산림이 없더라도 전문대학 임업과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창업차원에서 임업이나 농림복합 경영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를 거쳐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산림청)

: 한겨레 95.5.26., 20면; 한국 95.5.31., 13면; 세계 95.6.2., 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72~73면) · 제95-2호(108면) 참조

○ 어선의낚시객이용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휴어기를 이용한 바다낚시의 제도화를 위하여 「어선의낚시객이용에관한법률(가칭)」을 입법화하여 낚시객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바다낚시의 선박이용요금, 낚시용선박의 출입항신고 등을 명문화 함으로써 낚시객의 보호는 물론 어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함(박광훈 수산청장).

: 세계 95.6.16., 21면

○ 환경보전을위한농산물생산및가공유통의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①먼저 전체적으로 생산·가공·유통을 관리할 '환경보전형 농산물관리위원회'를 중앙, 시·도, 시·군 단위까지 3단계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며, ②생산자(단체) 및 생산농지(단지)는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생산방법의 기준을 염수하고 정기적인 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만약 생산방법에 대한 기준과 생산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③환경보전형 농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를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대중매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④산지직거래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수집·분산기능을 담당하는 물류기구를 설립·지원함(환경보전형 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

: 세계 95.6.2., 15면

◎ 建 設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시공업체의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공기를 공정별로 표준화, 정부시설공사 등 공공공사의 발주때 이를 지키도록

록 '표준공기체'를 도입·시행하도록 함(건설교통부).

: 조선 95.5.5.,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94면)·제95-2호(109면) 참조

○ 건설업법 개정의견

- 건설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중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한쪽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상대방이 반드시 응하도록 하며 이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전문중재기구인 '건설분쟁중재원(가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임(건설교통부).

: 중앙 95.6.10., 2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67~68면)·제9호(103~104면)·제12호(94~95면)·제95-1호(93면) 참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의견

- 농축산물판매장만 설립이 허용되는 자연녹지에 창고형 할인매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분야에서도 가격파괴가 확산되도록 현재 2천여개에 달하는 농협의 유휴창고시설을 회원제창고형 점포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로 함(재정경제원).

: 동아 95.5.18., 1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9면)·제9호(104면)·제10호(96~97면)·제11호(93면)·제13호(81면)·제94-1호(74면) 참조

○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공단의 기능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96년 하반기부터 조성된 지 10년 이상된 국가 및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재래식공단을 해당지방자치단체나 입주업체조합이 최신식 첨단공단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게 하고, 공단의 산학연 연계기능을 높이기 위해 새로 조성되는 신규공단은 공장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과 녹지는 물론 교육, 연구, 유통공원시설 등을 갖추는 복합공단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하며, 이를 위해 현행 관계법상 공업단지로 돼 있는 공단명칭을 산업

단지로 개정, 공단개발에 복합화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건설교통부).

: 한국 95.5.9., 8면

○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상가건물주의 횡포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히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이 제정되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안전관리체계강화관련 입법의견

- 여러법에 분산돼 있는 지하매설물 관련 공사지침을 한곳으로 통합,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도시구간에는 통신, 전기,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공동구 설치를 유도하기로 함. 시공비가 저렴한 부적격 보증업체의 난립과 이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업체의 보증을 현재의 대리시공에서 시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물적보증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대리시공업체는 재입찰로 새로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건설교통부).
 - 가스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등을 고쳐 시설점검 위주인 현행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그 이행실태가 부진한 기업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하는 등 외부관리를 강화함(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
 - 타공사로 인한 배관파손 방지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과 「도로법」 등에 이를 반영하여 지하철 공사장에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시가스누출감시체제를 구축하도록 함(박운서 통상산업부 차관).
 - 지하매설물 현황을 전산화해 종합관리하는 지리정보체계를 6대도시의 경우 96년까지 조기도입하고, 개별법령에 분산돼 있는 지하매설물관련 공사지침을 통합함(김건호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
- : 세계 95.5.3., 2면; 서울 95.5.3., 1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견

-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와 반환보장, 전세금 인상선 제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확정일자인으로 전세권을 보호해 줌과 동시에

최소한 전세금 반환지역에 따른 경매청구권도 보장하여 고의로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는 집주인의 횡포를 방지해야 함(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

: 국민 95.5.6., 5면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의견

- 시·도지사가 승인권한을 갖는 택지개발계획의 개발규모를 현재의 20만평 이하에서 1백만평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고,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상가부분을 뺀 주택부분의 면적비율 제한을 현재의 50% 미만에서 앞으로는 70%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주상복합건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함(건설교통부).

: 한겨레 95.6.9.,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5-1호(95면) 참조

○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의견

- 제주도에서 호텔을 새로 짓거나 골프장을 건설하는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하려면,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1인당 2백만원, 골프장은 1홀당 5천만원, 카지노는 1m²당 1백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함. 절대보전지역에 하수관시설, 공원시설, 군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지주 및 건물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개발제한 구역의 생활환경개선계획 수립도 주민의견 청취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를 개발할 때 받도록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간단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로 대신하도록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육사어류양식장을 추가하는 등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는 강화함(건설교통부).
-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개정(안)은 환경파괴적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제주도민 주체의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자연 및 자원을 보호하며, 산업을 보호·육성해 쾌적한 생활환경 및 관광여건을 조성한다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기본정신을 외면하는 것임(경실련).

: 동아 95.4.29., 29면; 한겨레 95.5.10., 3면

◎ 科學技術·交通·遞信

○ 교통시설설치등에관한특별예산조성법(가칭) 제정의견

- 벌칙금 수입이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다른 용도로 상당액이 전용됨으로써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교통범칙금 수입전액을 교통안전시설설치등 도로환경개선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통시설설치등에관한특별예산조성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당정).
- 선진외국에서는 광역교통관리기구를 설치하고 범칙금은 교통안전시설비로만 쓰도록 하는 특별회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시설 확충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함(이동섭 경찰청 치안연구소실장).

: 경향 95.5.15., 2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의견

-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도로면적점유(1인을 1km 수송할 때 차지하는 도로면적)가 버스의 4~5배, 전철의 28배나 되어 대도시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자가용 이용억제를 위해 서울 도심진입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부과 제도를 도입하여 96년 6월부터 시행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절차를 단축시키고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기회를 주기로 함(건설교통부).

: 세계 95.6.18., 2면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의견

- 소프트웨어 정보관리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정보통신부).

: 서울 95.4.29., 4면

○ 정보화촉진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①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최

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지역·산업 등 각분야의 정보화와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며, 지적재산권 등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이용자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과 컴퓨터바이러스, 해커와 같은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책에 대한 규정을 정함. ②정보산업육성을 위해 정보통신사업에 대해 제조업에 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단지나 신공항, 항만 등 특정지역에서는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의 허가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민간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 관련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③통신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도 넓혀 자가통신설비와 종합 유선방송 전송망도 통신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 및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의 재원에 대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주식매각 대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신설토록 함(유필계 정보통신부 정보정책과장).

- 정보화촉진기금조성은 한국통신의 주식매각대금을 정보화기금으로 조성, 정보화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해야함(정보통신부).
- 정부보유주식 매각대금은 기본적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 정부차원에서 관리해야 함(재정경제원).

: 조선 95.6.20., 1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6호(110면) · 제95-2호(116면) 참조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의견

- 현재까지 창작후 50년까지 인정됐던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을 공표연도의 말로부터 50년으로 변경하고, 87년 7월 1일 이전에 창작된 프로그램도 저작권을 소급해서 50년간 보호하며, 인터넷·하이텔·천리안 등 통신망을 통한 불법프로그램의 배포 또는 방조행위에 대해 최고 3천만원까지의 벌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대여와 CD롬 제작 등 멀티미디어산업 발전에 대비, 프로그램저작권을 대리·증개·신탁관리하는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도입,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정보통신부).

: 서울 95.4.29.,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56면) · 제95-2호(116~117면) 참조

◎ 環境 · 保健

○ 노인건강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노인성 질환 예방과 치료, 요양, 재활서비스 체계구축 등 종합적인 노인보건 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의 보건소를 제1차 노인 진료기관으로 육성할 방침 (노인복지대책위원회『노인복지종합대책』).

: 조선 95.6.8., 3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70면) · 제94-3호(120면) · 제95-2호(117면) 참조

○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의견

- 낚시행위가 하천의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해 희귀어종이 사라진다든지 산란기때 산란어종이 대량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선 소양교육을 받은 후 얼마간 면허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고 낚시면허를 따야 하며, 면허없이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됨(환경부).

: 세계 95.5.3., 29면

○ 식품위생법 개정의견

- 수입농산물과 식품의 검역 및 검사제도의 현재 최장 25일까지 걸리는 검역 및 검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신선과채류에 대해서도 '선통관 후검사' 제도를 확대시행할 방침이고, 수입농산물에 대해 선통관이 이뤄지더라도 도매상을 통해 소매상에까지 전달되는 데는 통상 5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충분한 검사와 검역을 실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입과채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회수하도록 하는 리콜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함 (홍재형, 재정경제원장관).

: 세계 95.4.29.,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70~71면) · 제94-2호(112면) · 제95-1호(97~98면) 참조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 X-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을 경우 종합병원은 3백만원, 병원급은 2백50만원, 조산원 및 의원급은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함(보건복지부).
: 세계 95.4.25., 29면

○ 의료보험법 개정의견

- 현재 직장의료보험조합의 경우에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가 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50~1백%씩 조합 사정에 따라 보상해 주는 것처럼, 공교조합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고, 의료 보험 혜택일수를 현행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연장함(보건복지부).
: 조선 95.5.30., 38면

○ 의료분쟁조정법(가칭) 제정의견

- 의료사고때 신속·공정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제도화해야 함(재정경제원).
: 서울 95.4.22., 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6호(113~114면) 참조

◎ 法院 · 法務

○ 관세사법 개정의견

- 96년부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국내에서 통관법인 및 관세사법인을 세워 관세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도 국내 관세사시험에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주며, 오는 2000년까지 수출입업체들에 양질의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세사의 수를 현재의 2배로 대폭 늘리는 한편, 일정기간 세관근무 경험이 있는 세관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던 관세사자격 부여제도는 96년 6월부로 폐지하기로 함(관세청).

: 세계 95.4.28., 8면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마약류범죄를 통해 불법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얻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매개로 보유·처분 등을 거쳐 증식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도록 몰수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법원은 기소와 상관없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마약사범의 재산에 대해 몰수나 추징명령을 내려 몰수·추징 등을 피하기 위한 재산처분을 미리 막도록 규정하고, 마약범죄로 번 불법수익금의 '돈세탁'을 막기 위해 돈세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금융기관은 마약과 관련한 불법자금의 흐름을 포착한 즉시 검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법무부).

: 서울 95.5.23., 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제9호(110~111면) · 제95-1호(99~100면) 참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관련 입법의견

- 선대묘소가 있는 종종산은 명의가 없더라도 공동소유자로 인정하며 후손중 성인남자의 반수이상 동의 없이는 매도거래권리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속을 인정하지 않으며,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로 명의가 변경된 종종산의 등기는 무효로 함. 종종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 인정되었더라도 종종산임을 알고도 종종원의 동의없이 매수한 것은 무효로 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국내입법의견조사」제95-2호(122~123면) 참조

○ 정보공개법(가칭) 제정의견

- 행정·입법·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하도록 하며, 국가안보나 외교상의 국익, 개인의 사생활 보호 관련, 법인과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경우 청구인은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각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위원회에 공개여부에 관해 다시 심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총무처).

: 중앙 95.5.21.,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제94-6호(118~119면) · 제95-1호(102~103면) 참조

○ 집단소송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동일한 사안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그 대표자나 소비자단체를 통해 한번의 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도록 함(재정경제원).

: 서울 95.4.22., 23면

○ 행정서사법 개정의견

- 가압류, 등록세, 교육세 납부를 다른 지방에서도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등기업무를 구청으로 일원화하며, 기타 「행정서사법」 또는 「법무사법」을 개정하여 행정서사가 행정관청인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 등의 대서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행정절차법(가칭) 제정의견

- 행정기관에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의 의사를 듣는 청문절차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사전에 막고 행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총무처).

: 한국 95.5.31., 3면

○ 형법 개정안

- 각종 컴퓨터범죄 처벌조항, 성인범 보호관찰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제,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사문서위·변조죄 등에 대한 벌금형 추가, 편지 등에 대한 비밀침해죄 처벌조항을 개정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제 도입으로 현재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 9가지로 꿰 있는 형벌의 종류를 넓히고, '환' 단위로 표기돼 있는 벌금 액수는 모두 '원' 단위로 통일시키기로 함(법무부).

: 중앙 95.8.,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8면) · 제94-6호(120면) · 제95-1호(103면) 참조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최소한 구속영장 심사 때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해야 함(대법원).
 - 6법의 하나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할 제도적 장치를 두지 않는다면 인권의 향상을 기하는 법 개정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할 수도 있음(재야법조계).
 - 긴급구속이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 수사기관이 체포 즉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해야 함(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한겨례 95.4.24., 2면; 국민 95.5.11., 2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제12호(110면) · 제13호(105~106면) · 제94-1호(85면) · 제92-2호(116~117면) · 제94-5호(131~132면) · 제94-6호(120~121면) · 제95-2호(127~128면) 참조

II. 主要立法豫告法律案

1. 主要立法豫告法律案 目錄

(1995.4.21. ~ 1995.6.30)

◎ 統一 · 外務 · 國防	111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內務 · 地方行政	111
○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온천법개정법률안	
◎ 社會 · 文化 · 教育	113
○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 產業 · 經濟	113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의장법 · 상표법 및 특허등록령개정안	
○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	

◎ 農林 · 水產	122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률안	
◎ 建 設	124
○ 자연공원법개정추가반영안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안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125
○ 과학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개정안	
○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안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	
○ 한국체신공사법제정안	
◎ 環境 · 保健	130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중개정법률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안	
○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의료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의료보호법중개정법률안	
◎ 法院 · 法務	134
○ 민사조정법중개정법률안	

2. 主要立法豫告法律案 内容

(1995.4.21. ~ 1995.6.30)

◎ 統一·外務·國防

○ 國家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5.26 (국가보훈처공고제1995-1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신체적 장애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의 수의사업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이들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또는 이와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및 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5.13 (국방부공고제1995-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필요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토지·건물 등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경우 대체시설의 가액이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상당의 토지·건물 등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 内務·地方行政

○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6.20 (내무부공고제1995-60호)

1. 개정취지

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직업훈련원생을 포함하고, 주민등록전산화에 맞춰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의 편성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동장 또는 직장의 장이 주민등록표 등 관련장부에 의하여 직권편성토록 개선함으로써 산업기술요원 육성지원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직업훈련원생을 민방위편성에서 제외함.
- 나.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의 편성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읍·면·동장 또는 직장의 장이 주민등록표 등 관련장부에 의하여 직권편성토록 함.
- 다. 민방위대원의 편성신고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의무를 해제함.

○ 온천법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6. 28 (내무부공고제 1995-15호)

1. 개정취지

온천의 온도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양질의 온천에 대하여는 개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온천요양 수요에 부응하고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온천의 건전한 개발·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온천의 온도기준을 지하증온율을 차감한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으로 하여 온도기준을 강화함.
- 지역적 특수성으로 온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곤란한 지역은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질병치료 및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은 보양온천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함.
- 동력장치의 허가시 수위측정장치 및 적산유량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의 지하수 개발을 금지하여 온천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도모함.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온천이용허가 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

◎ 社會 · 文化 · 教育

○ 저작권법증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5.23 (문화체육부공고제 1995-33호)

1. 개정이유

금년 1월 1일 출범한 WTO체제의 회원국 의무이행 차원에서 동협정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분야의 국제규범인 베른협약 가입에 대비함으로써 국제화, 세계화에 기여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저작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외국인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보호
- 나. 외국인의 저작권보호에 따른 경과조치 등
 - 내국인저작물의 보호수준과 균형유지
 - 법시행전의 적법한 이용행위에 대한 면책
 - WTO발효이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복제물의 배포에 대한 유예기간설정과 유예기간후의 배포에 대한 배타적 허락권 배제
 - WTO발효이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계속적 이용에 대한 배타적허락권 배제
 - WTO발효이전에 취득한 음반에 대한 대여권 배제
- 다. 발행시 기산주의 채택저작물의 보호기간 정비
- 라. 10년내 번역·발행되지 않은 저작물의 번역·발행 허용
- 마. 실연자에게 고정된 실연에 대한 복제권 부여
- 바.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수수료율에 대한 승인제 폐지

◎ 產業 · 經濟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증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6.14 (통상산업부공고제 1995-83호)

1. 개정취지

1994년 12월 7일자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1995년 4월 28일자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가스사고를 계기로 가스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징수시한을 폐지하고 신규로 LNG(액화천연가스)에도 이 기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하여 수입업자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고압가스를 관리하도록 함.
- 다.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관청이 확인도록 함.
- 라. 가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가스사용자로부터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마. 가스사업자에게 정기검사에 추가하여 수시검사를 받도록 함.
- 바. 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허가관청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사. 가스사업자 등은 가스사고 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 도시가스사업법종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6. 14 (통상산업부공고제 1995-81호)

1. 개정취지

1994년 12월 7일자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1995년 4월 28일자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가스사고를 계기로 가스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설치공사시 종래의 중간검사와 완성검사를 포함하는 시공 감리를 받고 적합할 경우에만 그 시설을 사용토록 함.
- 나.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에 추가하여 수시검

사를 받도록 함.

- 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교육 이외에 가스공급시설의 공사, 유지 또는 운용하는 자 및 시설의 점검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때 및 매년마다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도록 하며, 주요공급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 향상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라. 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해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배관의 매설상황을 조사하고 도시가스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작업기준을 준수토록 의무화함.
- 마. 대규모 도로굴착 시행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바. 전기철도사업자와 지하매설물 관리자는 그 시설로 인한 가스배관의 전기부식 방지를 위해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함.
- 사. 중대한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힌 경우에도 고의와 마찬가지로 벌칙을 부과함.
- 아. 대형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이외에 공제사업을 하도록 함.
- 자. 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시·도지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차.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통상산업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법규 위반자의 처분을 요구할 있도록 함.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6. 2 (재정경제원공고제1995-37호)

1. 개정취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지원이 필수적임. 정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을 마련하면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여력을 확충하고, 지방소재중소기업이 상호부조적 보증지원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첫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총액한도를 확대함.

둘째, 신용보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료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셋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설되는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재보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넷째, 기타 법상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정부,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조성토록 하 고 있으나, 기본재산의 조성재원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하여 이들 이외의 자 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의 자조적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될 지역신용보 증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재보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총액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익금 합계액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함.

라.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종류 등에 따라 보증료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 써 전반적인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증료율의 최고한도를 폐지함.

○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6. 2 (재정경제원공고제1995-36호)

1. 개정취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신용 보증지원이 필수적임. 정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을 마련하면서 신용보증 기관의 신용보증여력을 확충하고,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상호부조적 보증지원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첫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총액한도를 확대 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을 5년 연장함.

둘째, 신용보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료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셋째, 신용보증기금이 신설되는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재보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넷째, 기타 법상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출연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으나, 기본재산의 조성재원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하여 이들 이외의 자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의 자조적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될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재보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총액 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익금 합계액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함.

라.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종류 등에 따라 보증료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반적인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증료율의 최고한도를 폐지함.

마.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출연 외에도 금융기관의 출연이 당분간 지속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종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6. 14 (통상산업부 공고 제 1995-82호)

1. 개정취지

1994년 12월 7일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1995년 4월 28일자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가스사고를 계기로 가스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이 안전성면에서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함.

- 나. 액화석유가스용기를 저장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배달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배달 대행사업을 신설하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 다. 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벌금을 최고 5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 라. 허가관청은 가스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
- 마. 가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가스사용자로부터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바. 가스사업자 등에게 정기검사에 추가하여 수시검사를 받도록 함.
- 사. 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허가관청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아. 가스사업자 등은 가스사고 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관할 관청에 보고함.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예고일자 : 1995. 6. 3 (통상산업부공고제1995-73호)

1. 제정취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4,898호, 1995. 15)됨에 동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기업자로 보게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실질적 지배관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참여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사업조정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식을 규정함.
- 다.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위탁기업체는 그 시설의 내용 등 생산실태를 계열화촉진협의회에 신고토록 함.

- 라. 통상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의 장기위탁계약 체결과 약정서 교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표준장기위탁계약서 및 표준약정서를 작성·고시토록 함.
- 마. 위탁기업체 및 수탁기업체가 비치하여야 할 수·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기함.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특허등록령개정안

예고일자 : 1995. 6.15 (통상산업부공고제1995-80호)

1. 특허법증개정법률안

가. 개정취지

1993년12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정(UR/TRIPS)에 따라 동 협정내용과 맞지 않는 특허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특허제도의 세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기술개발의 성과를 신속히 보호함으로서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특허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실시에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 이외에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포함하도록 함.
-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불특허대상인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함.
- (3)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는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나 가능하도록 함.
- (4) 특허출원을 조기에 보호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특허출원후 1년 6월이전이라도 출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공고일부터 15년(단, 출원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출원일부터 20년으로 함.
- (6)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을 확대하여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7) 통상실시권이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만 그 설정을 재정할 수 있도록 함.

2.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가. 개정취지

19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정(UR/TRIPS)에 따라 동 협정내용과 맞지 않는 실용신안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기술개발의 성과를 신속히 보호함으로서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실용신안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실시에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 이외에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포함하도록 함.
- (2)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는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나 가능하도록 함.
- (3)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공고일부터 10년(단, 출원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출원일부터 15년으로 함.

3. 의장법중개정법률안

가. 개정취지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의장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추세에 부응하여 의장권자의 권리리를 조기에 보호하기 위한 공개제도를 신설하여 의장권 보호를 강화하고 의장개발을 촉진시킴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의장권에 의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장권의 실시에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 이외에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추가함.
- (2) 의장공개제도를 신설하여 의장등록출원인이 자기의 출원의장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면 특허청장은 그 출원의장을 공개하도록 하고 출원공개된 의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 의장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

를 증거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하여 심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도록 함.

- (3) 출원공개후 의장등록전에 제3자가 그 출원의장을 침해할 경우에는 출원인이 침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도록 함.
- (4) 출원공개된 의장을 제3자가 침해할 경우에 그 출원의장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4. 상표법증개정법률안

가. 개정취지

UR/TRIPS, 상표 통일화조약 등에서 인정토록 하고 있는 색채상표를 도입함으로 상표제도의 국제화에 부응하고, 산업계에 상표선택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현재 상표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는 색채를 상표의 구성요소의 하나로 명시함.
- (2) 색채가 상표의 구성요가 됨으로서 등록상표 및 색채상표의 효력 · 권리 범위 침해관계 등에 대한 특칙을 신설하여 색채상표의 적용을 명확하게 함.

5. 특허등록령증개정령안

가. 개정취지

인감증명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032호(1993.12.28.)로 개정되어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기타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또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과 상업등기처리규칙의 대법효기간이 3월에서 6월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허등록관련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특허등록신청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함.

○ 화물유통촉진법증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6.14 (건설교통부공고제1995-152호)

1. 개정이유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확정·공고('94. 7.30)된 화물유통체제개선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화물터미널 개발절차의 간소화·물류정보망의 구축 및 물류전문인력의 양성 등 협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합운송주선업과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일원화 등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복합운송주선업 신고요금제와 창고시설의 신축에 따른 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함.
- 나. 화물터미널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화물터미널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법에 의하여 간편한 절차를 거쳐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 화물터미널사업자가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 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1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추가로 의제함.
- 라. 물류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정보전산망을 구성·운영하는 전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사업자의 사업범위와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도록 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바. 물류전문인력의 양성·보급을 위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함.
- 사.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함.

◎ 農林·水產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6. 2 (재정경제원공고제1995-38호)

1. 개정이유

WTO체제의 출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는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

동 대책의 일환으로, 자본축적이 취약하고 담보력에 한계가 있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규모를 확충하고 신용보증지원대상을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에게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이외에도 '86년이후 중단된 금융기관의 기금출연을 재개함.
 - 출연기간: 1996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9년간)
- 나. 현행 신용보증대상자는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 등으로 되어 있으나,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 유통업자 및 가공업자를 신용보증 대상자에 포함함.
- 다. 전문농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의 대출에 대하여도 신용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농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금융기관에 포함함.
- 라.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보증총액한도를 기금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함.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률안

예고일자 : 1995. 6.28 (내무부공고제1995-14호)

1. 제정취지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의 현대화사업을 촉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100m^2$ 이내에서 농어촌주택을 개축하거나 재축·신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응자금을 지원토록 함. 다만, 수도권지역에서는 당해 지역을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100m^2$ 이내에서 개축하거나 재축할 때에 한하여 응자금을 지원함.
- 나.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도시지역 거

- 주주민과 농어촌지역의 주민은 농어촌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다. 내무부장관은 농어촌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농진공 등을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재성능검사, 시공감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라. 세대원의 전부가 1년이상을 거주하지 않고 비워두는 건축물을 공가로 정의하고 시장·군수가 공가에 대한 철거·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미이행시는 이를 시장·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 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장·군수이외 농어촌진흥공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농어촌주택조합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建 設

○ 자연공원법개정추가반영안

예고일자 : 1995. 6.22 (내무부공고제1995-61호)

1. 개정이유

1995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의견 조회, 입법예고 등 법적절차이행시 자연공원내 골프장, 스키장 설치규제 등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어 이를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반영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원계획』의 정의를 보전 이념에 맞게 조정

• 공원의 보호 및 이용증진 → 공원의 보호·관리와 적정한 이용 도모

나. 자연공원내에서 골프장, 스키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공원시설에서 제외함.

다. 공원관리청의 공원관리 의무를 보전위주로 전환

• 적정한 이용을 위한 개발·관리 → 적정한 이용을 위한 관리

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직의 합리적 개편

• 공원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존 상근 이사수의 범위내에서 부이사장제도 도입.

• 당연직 이사의 직급 하향조정

• 관련부처 차관급 → 관련부처 2·3급공무원

마. 공원지정 이전에 설치된 기존 적법 종교시설의 경우 내부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증축, 개축, 재축 허용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안

예고일자 : 1995. 5.19 (건설교통부공고제1995-129호)

1. 개정이유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지원 및 영세 농어민에 대한 금융비용 경감을 위하여 농협 등의 감정평가업무 허용기간을 연장함.

2. 주요골자

감정평가사가 아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대출을 목적으로 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업무를 1995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동 감정평가업무 허용기간을 농수산물 시장개방 시한인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 科學技術·交通·遞信

○ 과학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5.26 (과학기술처공고제1995-23호)

1. 개정취지

국가정책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연구개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시책의 주체를 범부처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차원에서의 종합·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진흥법과 개별 법령과의 체계적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나. 과학기술진흥시책의 주체를 정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에서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 종과심에서 우선적으로 심의할 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안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라.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의 주체를 과기처장관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차기년도 종과심에 보고하도록 함.
- 마. 민·군 공용기술의 개발·이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규정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진흥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기존법률과의 연계규정을 마련함.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개정안

예고일자 : 1995. 5. 2 (정보통신부공고제1995-62호)

1. 개정취지

법 제정 이후 산업환경 및 여건의 변화와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업무의 이관에 따른 관련규정을 현실화하고, 과거 연구개발 중심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 정책에서 보다 광범위한 각도의 육성지원정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프트웨어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 근거규정을 신설함.
-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진흥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진흥시책 내용을 명시함.
- 다.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의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함.
- 라. 소프트웨어 정보관리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마. 프로그램의 품질보증기준을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기준으로 명칭을 개정함.

- 바.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에 대한 고시근거를 신설함.
- 사.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을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으로 변경하고 동 기준을 소프트웨어에 관한 예산편성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아. 소프트웨어공동개발구역을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변경
- 자. “소프트웨어 진흥사업”의 주된 내용인 “소프트웨어 공제사업”을 구체화하고 타조항과 중복 등으로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함.
- 차.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준비금적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법정기관으로 함.
- 타. 소프트웨어사업의 진흥시책 수행기관에 대한 자금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안

예고일자 : 1995. 5.13 (정보통신부공고제1995-68호)

1. 제정취지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사회전반의 정보화촉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가 시급하므로 정부가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현재 각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진흥 및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시책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부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사업의 진흥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등 6개기본원칙에 따라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나. 정부는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촉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술지원을 위해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라. 정부는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공공지역 산업정보화를 추진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며, 공공기관보유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며,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센터를 설치함.
- 마.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단지조성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함.
- 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초고속정보화기획단을 설치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고속망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전송망 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사. 정부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사업진흥 및 정보통신기반 고도화를 위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주식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

예고일자 : 1995. 5. 2 (정보통신부공고제 1995-63호)

1. 개정취지

UR/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의 국내적용 및 관련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도 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보호함
- 나.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프로그램이 공표된 연도의 말부터 50년간으로 함
- 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대상에 학교의 입학시험 또는 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창작하기 위한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함.
- 라. 프로그램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함.
- 마.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을 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함.

- 바. 현행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동 보호원에 두도록 함.
- 사. 프로그램저작권을 대리·증개·신탁관리하는 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아. 1987년 7월 1일 이전에 창작된 프로그램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그 저작권을 보호하도록하는 소급효를 인정함.

○ 한국체신공사법제정안

예고일자 : 1995. 5.12 (정보통신부공고제 1995-65호)

1. 제정이유

세계화, 지방화로 시장경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우편 및 체신금융사업을 정부기업에서 공기업인 한국체신공사로 경영체제를 전환시켜 동 사업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감으로서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우편 및 체신금융사업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고 기업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체신공사를 설립함.
- 나. 공사의 자본금을 7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되, 현금외에 부동산, 동산이나 권리 등으로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함.
- 다. 공사는 우편 및 체신금융에 관한 영업과 그 부대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라. 공사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 융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마. 공사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바. 공사는 보유시설 및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또는 수익금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사. 공사는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특정한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 우편 및 체신금융시설을 폐지하거나 운영중지할 수 없을 경우 당해기관 또는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운영손실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아. 한국체신공사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현물출자가 있는 날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함.

◎ 環境 · 保健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6.16 (보건복지부공고제1995-42호)

1. 개정이유

연간 180일로 제한되어 있는 요양급여기간을 연장하여 피보험자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하고 직장의료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보험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의료보험급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180일로 제한되어 있는 요양급여기간을 210일이상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65세 이상의 노인 및 등록장애인에 대한 급여기간제한을 철폐함.
- 나. 금전대체부담금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 다. 본인부담금을 일정액이상 부담한 경우 그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안

예고일자 : 1995. 5.23 (법무부공고제1995-18호)

1. 제정취지

최근 크게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국제적 범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마약류범죄를 효율적으로 진압하기 위하여 마약류범죄를 가중처벌하고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관여한 자들로부터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불법거래의 주요동기를 제거하는 한편, 국제적 협

력하여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기타 관계법령의 특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마약류범죄 가중처벌

부정한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마약류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기존의 단순 영리목적 범죄에 비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 등의 수입·수출·제조 등을 업으로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및 1억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함.

나. 자금세정행위 방지

- 마약류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세정하여 다시 마약류범죄나 다른 범죄에 재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세정행위를 처벌토록 함.
- 금융기관이 자금세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기관 등이 마약류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수수한 재산이 불법수익임을 알게 된 경우 검찰총장에게 신고토록 함.

다. 몰수범위의 확대

- 마약류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재산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몰수보다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마약류범죄행위로 직접 얻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함.
- 약물범죄를 업으로 한 경우 그 기간중 취득한 재산이 범인의 재산운용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불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불법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둠.

라. 몰수·추징보전제도

몰수·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소전 또는 기소후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법원이 몰수·추징명령을 발하여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고, 부동산·동산·채권 등 몰수·추징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른 세부적 보전절차를 규정함.

마. 제3자 보호절차

제3자의 재산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된 경우 그 제3자가 당

해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귀책 사유없이 참가하지 못한 제3자는 민사소송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입국 및 상륙절차의 특례

마약류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범인의 도주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갖추어 약물범죄혐의자의 입국 및 마약류의 반입등 을 허용함.

사. 국제공조 절차

국제화 추세에 있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 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외국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몰수·추징·재산의 집 행 또는 몰수·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절차를 규정함.

○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4. 22 (보건사회부공고제1995-27호)

1. 개정취지

식품산업이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 할 때마다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던 품목허가제를 폐지하여 영업자가 자유롭게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허가제 폐지등 사전규제완화에 따른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해식품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대폭강화하는 등 식품위생 행 정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민건강 위해식품에 대한 국민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상 필요한 경우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나. 제품검사 대상식품중 자가품질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인삼제품에 대하여는 출하전 제품검사대신 자가품질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다. 인삼제품의 원활한 수출촉진을 위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단체의 수출추천 제도를 폐지함.

라. 수입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중인 수입식품에 대

하여도 국내식품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적용 범위를 확대함.

- 마. 식품제조업자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제품 생산시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품목제조허가(신고)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식품기준·규격에의 적합여부 확인 등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품 생산후에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보고토록 함.
- 바. 보건복지부장관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제한권한을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 위임에서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이양함.
- 사.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만 위생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까지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아. 국민건강 위해식품에 대한 식품제조업자의 자진회수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민보건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유통중인 당해식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하는 식품회수제(Recall)를 도입함.
- 자.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에는 당해 품목에 대해서만 제조정지처분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 품목류 전체품목에 대하여 제조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 국민건강 위해식품 등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금액을 현행 300만원 내지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 내지 3천만원으로 인상함.

○ 의료보험법증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6. 16 (보건사회부공고제1995-41호)

1. 개정이유

연간 180일로 제한되어 있는 요양급여기간을 연장하여 피보험자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보험의 질적향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의료보험급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180일로 제한되어 있는 요양급여 기간을 210일이상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65세 이상의 노인 및 등록장애인에 대한 급여기간제한을 철폐함.

나. 기 실시하고 있는 금전대체부담금제도 및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 의료보호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6.16 (보건복지부공고제1995-43호)

1. 개정이유

연간 18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의료보호급여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층의 의료 수혜를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던 1차진료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하는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의료보호기간을 연간 180일이내에서 210일이상으로 연장하되,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나. 현재 의료보호 1·2차 진료기간을 모두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으나 1차진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함.
- 다. 진료기관에 과다납부한 본인부담금의 반환한계금액을 의료보험법과 동일하게 1,000원 이상으로 정함.

◎ 法院·法務

○ 민사조정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5. 6.26 (법무부공고제1995-20호)

1. 개정취지

- '94년도 조정사건처리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조정으로 최종 종결된 사건이 73.2%에 이를 정도로 그 효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수소법원에서만 조정 회부가능하도록 규정되어 항소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없었던 폐단을 시정하려는 것임.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론상 이의신청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조정이 개시된 경우에만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용하고 제1심 수소법원이 조정회부한 경우 경정을 허용치 않아 소취하후 재차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절차적 낭비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심급에 관계없이 수소법원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조정 회부
- 이의신청 당사자가 당해 심급 판결선고시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 취하 가능토록 규정하고 이에 부수하여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며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취하와 이의 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부여
- 제1심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경우에도 피고의 결정을 허용.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함.

III. 最新法令 目錄

(1995.4.21. ~ 1995.6.30)

공포번호	전명	공포연월일
법률 4948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5. 5.10
조약 1284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협정	1995. 4.21
1285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세관분야협력및상호지원에관한협정	1995. 5. 4
1286	대한민국정부와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간의과학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95. 5.10
1287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95. 5.17
1289	대한민국정부와이스라엘정부간의사증면제에관한교환각서	1995. 5.29
1288	대한민국정부와필리핀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1995. 6. 2
1290	대한민국정부와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간의문화협정	1995. 6.12
1291	대한민국정부와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	1995. 6.16
1292	대한민국과불가리아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1995. 6.19
1293	대한민국정부와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정부간의경제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95. 6.22
1294	대한민국정부와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정부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95. 6.28
대통령령 14632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증개정령	1995. 4.28

공포번호	전명	공포연월일
14633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4.28
14634	은행법시해령중개정령	1995. 4.28
14635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4.28
14636	보호관찰법시행령개정령	1995. 4.28
14637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4.28
14638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4.29
14639	먹는물관리법시행령	1995. 5. 1
14640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95. 5. 1
14641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5. 1
14642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5. 1
1464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5. 1
1464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5. 4
14645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1995. 5.12
14646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5.16
14647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5. 5.16
14648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	1995. 5.16
14649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5.16
1465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1995. 5.19
14651	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개정령	1995. 5.19
14652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5.19
14653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995. 5.29
14654	공무원임용령시험령중개정령	1995. 5.29
14655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995. 5.29
1465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5. 6. 1
14657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5. 6. 1
14658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6. 1
14659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5. 6.10
14660	전문대학설치기준령중개정령	1995. 6.10

공포번호	제 명	공포연월일
14661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증개정령	1995. 6. 10
14662	국외여비규정증개정령	1995. 6. 10
1466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증개정령	1995. 6. 14
14664	수난구호법시행령개정령	1995. 6. 16
14665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5. 6. 16
14666	골재채취법시행령증개정령	1995. 6. 16
14667	21세기위원회규정개정령	1995. 6. 16
1466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증개정령	1995. 6. 17
1466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증개정령	1995. 6. 17
14670	군인사법시행령증개정령	1995. 6. 17
14671	교육법시행령증개정령	1995. 6. 17
14672	대학학생정원령증개정령	1995. 6. 17
14673	잡업법시행령개정령	1995. 6. 17
14674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증개정령	1995. 6. 22
14675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증개정령	1995. 6. 22
14676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증개정령	1995. 6. 22
14677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증개정령	1995. 6. 22
14678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1995. 6. 22
14679	농어촌정비법시행령	1995. 6. 23
14680	산림법시행령증개정령	1995. 6. 23
1468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증개정령	1995. 6. 23
14682	소득세법시행령증개정령	1995. 6. 30
14683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 에관한규정증개정령	1995. 6. 30
14684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 한규정증개정령	1995. 6. 30
14685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증개정령	1995. 6. 30
14686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령증개정령	1995. 6. 30
14687	농산물검사법시행령증개정령	1995. 6. 30

공포번호	전명	공포연월일
14688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5. 6. 30
14689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6. 30
1469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5. 6. 30
1469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6. 30
총리령 503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 26
504	보험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 29
505	소득세법시행규칙개정령	1995. 5. 3
506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5. 19
507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6. 8
50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5. 6. 17
509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6. 17
51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6. 30
외무부령 179	국제협력요원경비지급규칙	1995. 5. 3
646	지적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 26
내무부령 64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 25
648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 28
649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5. 27
650	수난구호법시행규칙	1995. 6. 24
법무부령 403	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6. 10
404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6. 24
405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중개정령	1995. 6. 24
406	검찰사건사무규칙중개정령	1995. 6. 24
국방부령 457	병역법시행규칙개정령	1995. 6. 30
교육부령 660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 28
661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중개정령	1995. 6. 8
662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6. 8
문화체육부 20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	1995. 4. 22

공포번호	건명	공포연월일
농림수산부령 1187	21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중개정령	1995. 4.26
	1188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1995. 5.12
	1189 수입식물검역규칙중개정령	1995. 6. 1
	1190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6. 2
	1191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6.23
	1192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6.23
	1193 농수산통계사무소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6.28
	1194 국립농산물검사소지소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6.28
	1195 국립동물검역소지소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6.28
	1196 국립식물검역소지소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6.28
통상산업부령	119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6.30
	11 광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5. 6
	12 군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5.16
정보통신부령	7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4.29
	8 무선설비형식검정및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중개정령	1995. 5.10
	9 체신부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개정령	1995. 5.23
	10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1995. 5. 1
환경부령	11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1995. 5. 1
	1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5. 6.10
보건복지부령	7 국민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	1995. 5.23
노동부령	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개정령	1995. 4.29

공포번호	건명	공포연월일
건설교통부령	9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5. 26
	99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6. 5
	100 고용보험법시행규칙	1995. 6. 12
	14 항만시설사용규칙중개정령	1995. 4. 24
	15 고속철도사무에관한한시조직설치규칙중개정령	1995. 4. 25
	16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5. 26
	17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중개정령	1995. 5. 29
	19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1995. 6. 3

국내입법의견조사 95-3 地方教育自治制度의 改善

1995년 9월 25일 印刷

1995년 9월 30일 發行

發行人 白 南 辰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 컴퓨터 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 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500 원

